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tective Legisl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North Korea

2001. 12

연구자 : 朴 井 源(國民大 教授 · 招請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구 분	연구보고 2001-	발행처		연구자	朴井源
제 목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요약문	<p>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보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본다.</p> <p>첫째,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의 개념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고, 그 국제법적인 태도에 관하여 언급한다.</p> <p>둘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현행 남한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한다.</p> <p>셋째, 중국의 專利(특허)제도를 개관한다. 중국의 특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방의 형태와 내용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틀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특허제도를 비교 고찰한다.</p> <p>넷째,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교류 협력방안을 생각해본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과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남북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화방안 대체적인 틀을 구상해본다.</p> <p>다섯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의 현실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전망한다.</p>				
키워드	공업소유권, 발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창의고안권), 상표권, 의장권(공업도 양권), 발명자증, 專利,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발간사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사업의 전개는 그간의 남북관계를 새로이 가다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른바 남북경협 보장 4개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제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의 채택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로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로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제도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김일성 시대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체제수호를 위한 방편의 하나를 경제개방을 통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개방은 북한의 전체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정책 전환은 그 자체로 북한의 변화라는 일단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조치는 바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일련의 법제정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의 헌법개정은 김정일체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과 권력체제의 개편이라는 배경과 함께 주요 경제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의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1992년부터 외국인투자법 및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고,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등을 새로이 제정하는 동시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정비하면서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9년부터는 그간의 경제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들 대외경제개방법제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은 가공무역법, 갑문법, 자작권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제정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법제의 정비는 바로 김정일시대의 경제과업의 중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력갱생을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창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경제

부문에서의 도약을 강조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보기술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을 강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998년 「발명법」의 제정과 2001년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은 북한의 경제개방과 과학기술의 강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업소유권의 강조는 경제발전 전략의 한 분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제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법제에 관한 분석과 이해는 북한법제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라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도 산업재산권 분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해와 함께 그 구체적인 법제분석은 현재의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경협의 일환으로 상호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비교분석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일을 대비하는 또 하나의 연구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남북의 경협의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북한법 및 통일법제 연구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법적 분야에서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연구환경 하에서도 연구에 최선을 다해준 朴井源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1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徐 承 完

目 次

제 1 장 序 論	9
제 1 절 研究의 目的과 必要性	9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13
제 3 절 論議의 限界 및 前提	15
제 2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制度의 分析	17
제 1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意味와 概念	17
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概念	17
1. 工業所有權의 意味	17
2. ‘知的(知識)財產權’과 工業所有權(產業財產權)	19
I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種類	22
1. 特許權	22
2. 發明權	23
3. 商標權	23
III. 北韓의 發明權과 特許權의 比較	24
1. 發明權의 優先的 措置	24
2. 發明權과 特許權의 差異點 分析	24
IV.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의 特徵	27
1. 資本主義國家의 特許權과의 差異點	27
2.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特徵(所有權과의 比較)	27
제 2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의 法的 保障	28
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國內法的 保護	28
I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國際法的 保護	30
III. 北韓의 工業所有權 管掌機關	33
제 3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關聯法制 分析	37
제 1 절 北韓의 ‘發明 및 創意考案’에 관한 法令	38

I. 沿革 및 構成體系	38
II. 概念 및 適用對象	39
III. 權利의 種類	41
IV. 主要 內容	43
1. 特許出願對象	43
2. 不特許對象	43
3. 特許登錄要件	44
4. 特許出願節次	45
5. 審查 및 異議申請 節次	45
6. 制裁	46
 제 2 절 北韓의 ‘商標 및 工業圖案’에 관한 規定	47
I. 沿革 및 構成體系	47
II. 立法目的 및 概念定義	47
III. 商標制度	48
1. 商標出願 主體 및 對象	49
2. 登錄要件	50
3. 出願 및 審查節次	50
4. 商標權	53
5. 商標權의 讓渡 · 使用權 · 抛棄 · 取消	54
IV. 工業圖案制度	54
V. 本來名稱制度	55
 제 3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制度와 南韓의 產業財產權制度 比較	55
I. 南北韓의 產業財產權制度의 體系	56
1. 北韓의 工業所有權制度	56
2. 南韓의 產業財產權 制度	56
3. 南北韓의 產業財產權保護에 대한 國際法的 態度	57
II. 南北韓의 特許制度 比較	58
1. 北韓의 特許制度 概觀	58
2. 南韓의 特許 및 實用新案 制度 概觀	62
III. 南北韓의 商標制度 比較	65
1. 北韓의 商標制度 概觀	65

2. 南韓의 商標制度 概觀	70
3. 審判制度	73
IV. 南北韓의 意匠制度 比較	75
1. 北韓의 工業圖案(意匠) 制度 概要	75
2. 南韓의 意匠制度 概觀	75
 제 4 장 中國의 專利(特許)制度 概觀	79
제 1 절 中國의 專利(特許)制度의 概念과 分類	79
I. 專利(特許)의 意味	79
II. 專利權 分類	80
III. 中國의 特許管理機關(國家知識產權局)	80
IV. 專利代理機構	81
제 2 절 中國의 改正 專利法 分析	82
I. 專利法의 改正背景 및 意義	82
1. 對外的 背景	82
2. 對內的 背景	83
II. 中國 專利法의 主要內容	84
1. 總 則	84
2. 專利實施의 強制許可	87
3. 專利權의 保護	88
4. 中國 特許制의 國際的 基準의 受容	90
제 3 절 中國과 北韓의 特許制度 比較	92
I. 中國과 北韓의 經濟開放法制의 比較	92
II. 中國과 北韓의 特許法制 比較	94
 제 5 장 南北韓의 產業財產權 保護 및 交流協力의 制度化方案	99
제 1 절 南北韓의 產業財產權分野 交流方案	99
I. 南北韓의 產業財產權分野 交流協力의 背景	99
1. 南北韓의 產業財產權分野 交流協力의 背景	99

2. 南北韓 사이의 產業財產權 交流協力의 現況	100
II. 南北韓의 相互 產業財產權 保護制度(事例分析)	101
1. 南韓에서의 北韓 工業所有權의 保護	102
2. 北韓에서의 南韓 產業財產權의 保護	103
제2절 南北韓間 產業財產權 交流協力 方案 檢討	105
I. 交流協力의 基本方向	105
II. 短期的 分野別 · 事案別 交流協力 方案	106
1. 相互出願 및 登錄保障 措置	106
2. 出願代理問題	106
3. 相對方 權利의 相互 保護問題	107
III. 中長期的 交流協力 課題	109
IV. 統一段階의 產業財產權 統合課題	110
1. 南北韓間 相互依存體制의 構築	110
2. 產業財產權의 單一 立法 및 特許機關의 統合	111
제3절 南北韓의 產業財產權 保護 및 交流協力의 制度化	113
I. 南北韓 產業財產權 保護에 관한 合意書의 採擇	113
II. 南北間 合意에 대한 法的 拘束力의 確保	114
III. 南北韓의 法制度의 協力關係 構築	116
제6장 結 論	119

〈附 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23
‘발명 · 기술혁신법’(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146
북한의 「발명법」(5장 43조) 법규 해설	153
북한의 ‘창의고안규정에 대하여’(4장 23조) 법규해설	157
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	160
〈參考文獻〉	173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目的과 必要性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사망(1994. 7) 이후 김정일(金正日)에로의 권력승계에 따른 김정일체제를 구축하여 김정일시대를 맞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의 움직임은 두드러진 북한의 자세변화를 보이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경제 발전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정체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바로 북한경제의 대외부문에서의 개방과 그 정책전개로 대변될 수 있다. 1980년대 말 구소련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변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사이의 국제적 연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북한이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서는 자생적인 경제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대내외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정책적 전환의 모습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북한법제에 반영되었다. 특히 1992년과 1998년 북한헌법의 경제조항의 개정내용은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 아울러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²⁾ 이러한 북한의 법제정비의 추세는 1999년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³⁾

1)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한국법제연구원, 1999), 13~62면.

2)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동향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V):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 編」(한국법제연구원, 1998), 17~112면.

3) 북한의 1999년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 내용을 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인민경제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면에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대외무역의 강화와 관련하여 인민경제의 과학화라는 명분 아래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 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 살수 없습니다”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대외무역의 강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무역분야에서 이른바 기술무역이 대외무역의 한 형태로 등장하고 국가간 경제 및 과학기술의 협력과 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른바 새로운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신사고·종자론 등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실리를 지향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새것을 창조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열린 자력갱생”⁵⁾이라고 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2001. 4. 5)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2001. 4. 12) 등을 통하여 내

(1999. 2. 26)으로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개칭),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등 9개의 법률이 개정되고,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등 5개의 규정이 개정되었다(이번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이유는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27일; 이찬우,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http://www.kotra.or.kr/nk/.p.1>). 이번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배경은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앙 정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법제의 조문비교는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 (KOTRA) 북한실 website (<http://www.kotra.co.kr/nk/nation/law/2002.html>) 참조.

4)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2000년 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 61면에서 인용.

5) 「로동신문」(정론), 2001년 1월 30일.

각중심으로 경제과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단번도약론’을 제시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을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⁶⁾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에서 엿볼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행보는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의미와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전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김정일의 비공식중국방문(2001. 1. 15~20)은 북한과 중국간의 상호 친선협조관계의 진전을 통한 쌍방관계의 발전에 중점을 둔 것과 함께 이 기간동안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 시의 ‘경제특구’ 및 푸둥(浦東)지구를 중심으로 시찰하고 상하이 시의 발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의 방향과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⁷⁾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 가운데 북한은 기술무역의 일환으로 공업소유권과 그 보호제도에 관하여 큰 관심을 두고 다루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기술무역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업소유권과 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⁸⁾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특허 신청을 확대 강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⁹⁾. 또한 북한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구체적 보호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¹⁰⁾

더욱이 남북 사이에는 2000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6) 「북한동향」, 제570호(통일부, 2001. 12. 25~21), 41면.

7)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관해서는 「주간북한동향」, 제522호(통일부, 2001. 1. 13~20), 3~7면.

8) 최정희, 앞의 논문, 61면.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0년 8월 5일). 아울러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북한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특허나 상표에 대한 출원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상 북한주민보다는 대부분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산업재산권”, 「북한뉴스레터」, 2000년 8월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8. 9); 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tc_26.php3.

10) 즉, 남한이 가입하지 않은 ‘상표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과 ‘의장(意匠)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이에 따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이 선언의 실천과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남북의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 사이의 세부합의서가 협의되고 일부 분야에서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법제도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재화에 화체되어 유통되는 지적재산권¹¹⁾에 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대북투자 기업체의 북한내 산업체재산권 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북한의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의 개념 및 그 보호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공업소유권 및 그 보호제도에 관하여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또한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남북이 상호 산업체재산권 내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합의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그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산업체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논구를 통하여 북한의 공업재산권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의 산업체재산권 보호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11) 지적재산권제도는 특허제도·상표제도·저작권제도 등이 서로 상이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 특허와 상표는 이른바 ‘산업재산권법’으로 통합되어 ‘저작권법’과 함께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강학상(講學上)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는 달리 비재산권적 요소인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소유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적재산권 내지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산업체재산권, 공업소유권 등의 개념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정책전환은 북한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도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기술혁명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북한이 나름대로 ‘경제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추세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연구범위를 두고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고찰한다.

첫째, 북한의 ‘공업소유권’과 그 보호제도에 관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발하는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법제를 살피고,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태도에 관하여 언급한다.

둘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현행 남한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분석해본다.

셋째, 중국의 전리(專利: 특허) 제도를 개관한다. 중국의 특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방의 형태와 내용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틀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특허제도를 비교 고찰한다. 특히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에 있어서 자본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에 비해 북한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체제안정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북한의 태도를 살펴본다.

제 3 절 論議의 限界 및 前提

넷째,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교류 협력방안을 생각해본다. 현시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과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방안의 대체적인 틀을 구상해본다. 특히 남북간 경협보장을 위한 4대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를 채택하고 이의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를 짧는 과정에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남북의 산업재산권보호방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안은 생각해본다.

다섯째, 끝으로 본고에서의 논구를 통해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의 현실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전망을 해본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란 범위에서 일 부분을 차지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북한의 지적재산권의 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는 그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무릇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논구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이해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강화되는 단계에서 또 하나의 교류협력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산업재산권보호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수용 및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남북의 경협과 관련한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상호 산업재산권 보호방안을 검토해봄으로써 남북경협의 법제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의 관련 원전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사례를 찾아 분석해본다.

제 3 절 論議의 限界 및 前提

북한은 공업소유권 제도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업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제는 그 연혁을 1950년대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들은 현재까지 변화를 계속해왔다. 현시점에서 분석되는 북한의 공업소유권 제도는 최근 법제정비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정들의 전문(全文)이 공표되지 않거나 아직 입수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북한법령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관련법의 전문은 기본적인 분석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적 논구를 전제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경우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바로 북한의 입법체계의 비합리성 내지 비체계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관련법제의 최신법령의 전문(全文)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에 제약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법제는 전체적으로 그 비체계성에 의해 관련법령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 애로를 겪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상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지만,¹²⁾ 한편 최근 북한의 정책전환 내지 환경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개편이라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법제의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북한법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북한법제의 명확한 정보는 북한에서의 정상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입수경로도 비공식적인 것이어서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만 하더라도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의 법령은 확보되었지만,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정비되었다고 밝힌 발명법,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등을 아직 그 전문(全文)이 공표되지 않고 있거나 입수되지 못한 상황임을 밝혀둔다.¹³⁾

12) 북한의 입법체계 및 문제점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의 立法體系 -立法機關 및 立法節次를 中心으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의 기본방향」(법제처, 1999), 67~102면.

제 3 절 論議의 限界 및 前提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급은 북한의 최근 관련법제의 정비내용을 기초로 하되, 관계규정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서의 분석이 북한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북한은 관련법령의 전문(全文)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법제정비의 기본내용에 관해서는 법령개정의 사실과 함께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북한의 관계법령의 전문(全文)이 공표되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보완 수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13) 관련 내용은 해당 부문에서 후술한다.

제 2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制度의 分析

북한은 우리의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개념을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또한 그것을 남한에서 사용하는 산업재산권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이른바 지적재산권 분야의 발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업소유권의 의미와 내용은 발전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意味와 概念

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概念

1. ‘工業所有權’의 意味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이란 의미는 우선 사전적(辭典的)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경제사전」에 의하면, 공업소유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특허권과 발명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 등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공업소유권보호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달리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⁴⁾ 또한 북한의 「민사법사전」은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업소유권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발명권, 특허권, 발견권, 창의고안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원산지명권(특정한 생산물의 원산지를 독점할 권리)과 같은 권리들이 속한다”고 하고,¹⁵⁾ 공업소유권은 다른 소유권과는

14)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79면.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북한의 「법학사전」(1971),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15) 북한의 「경제사전」의 정의와 비교하여 「민사법사전」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특허권과 발명권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실용신형권을 발견권과 창의도안권으로 새로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制度의 分析

달리 대상별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의 공업소유권담당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심의를 받고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북한에서도 법과 규정에 의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¹⁶⁾

그리고 북한에서는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공업, 농업, 상업, 건설운수, 보건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지적창조물에 대한 창조자의 인격권 및 재산적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¹⁷⁾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여기에서 인격적 권리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의 우선권을 증명받을 권리”이며, 재산권 권리란 “발명가의 허가없이는 발명한 제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수출, 수입 할 수 없다는 것을 담보하는 권리”라고 한다.¹⁸⁾

이러한 북한이 설명을 통하여 북한에서도 인간의 지적활동(인간두뇌의 활동)에 의한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점유·이용·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지적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태도를 북한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른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Revisions : 파리조약)¹⁹⁾에의 가입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은 제1조에서 “공업소유권이라는 말은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공업 및 상업뿐 아니라 농업과 채취공업분야 및 제작되었거나 천연적인 모든 생산품(예를 들면, 포도주, 알곡, 잎담배, 과일, 집집승, 광물, 약수, 맥주, 꽃, 알곡가루에 대해서도 사용한다”고 한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공업소유권은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공업 및 상업

16)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58면.

17) 최정희, 앞의 논문, 61면.

18) 위의 논문, 같은 면.

19) 이 조약은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되어 1884년부터 발효되었다. 2000년 말 기준 가입국 수는 160개국이고, 남한은 1980년 5월 4일, 북한은 같은 해 6월 10일 가입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산업재산권 보호동맹」이란 국제기구가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채취공업분야도 다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⁰⁾ 아울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상표, 창의고안, 제작구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은 공업소유권제도에서 독점권은 발명과 제작상의 새로운 창안이나 제품의 형태와 색채, 무늬의 창안, 그리고 표식으로서의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고 한다.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과 제품의 제작, 결합에 대한 창안으로서의 창의고안, 제품의 형태와 색채, 무늬에 대한 창안으로서의 공업도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상표권’은 상품의 식별을 위한 표식에 대해 부여한다고 설명한다.²¹⁾

이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특허권을 받은 발명, 창의고안, 공업도안과 상표권을 통틀어 ‘공업소유권’이라고 하고 있다.

2. ‘知的(知識)財產權’과 工業所有權(產業財產權)

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상응하여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하여 발전적 조치를 취하여왔다. 또한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범위에서의 변화도 가져왔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급속한 문명발달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등의 확산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의 지식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시대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지적재산권은 넓은 의미에서 상업적·과학적·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²³⁾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20) 위의 논문, 같은 면.

21) 위의 논문, 같은 면.

22)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는 영어표기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번역한 것으로 일본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기초하여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지식산업’이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제시되면서 ‘知識財產權’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金元俊, 「特許法」(박영사, 2001), 3면.

23) 법적 용어로는 無體財產權(intangible property right)을 말한다. 아이디어, 발명, 상표, 의장, 영업비밀, 산업공정, 화학식 등과 같이 어떤 가치있는 인간의 지적 산물을 말하며, 재산권측면에서 부동산과 같은 有體財產權에 대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식재산권)의 정의에 관해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개념과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 보호수준과 대상은 확대되어 나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정의하는 데에 있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²⁴⁾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에서는 ‘WIPO’협정이라고 함)은 다음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에 의하면, ①문학적·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②예술가·음악가 및 방송자의 실연행위, ③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과학적 발견, ⑤의장, ⑥상표·서비스표 및 상업적 명칭과 표시, ⑦부정경쟁 방지 및 산업적·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인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에서는 ‘TRIPS 협정’이라고 함)²⁵⁾에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조제2항). 이에 의하면, 보호대상의 지적재산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히,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 등을 의미하고 있다.²⁶⁾

무릇 정보화시대에서 지적재산의 개념과 범위는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종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혹은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방지 등을 포함한다.²⁸⁾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관련되며, 전형적인 창작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과 산업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의장으로 분류한다.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특히,

24) 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을 관리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5) 이 조약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하나의 다자간 협정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통일적인 보호를 강화한 협정이다.

26) 金元俊, 앞의 책, 5면.

27) 위의 책, 5~15면.

28)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제1조제2항.

실용신안, 의장,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상호 등), 자리적 표시(출처표시, 원산지명칭),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의 권리로서 일정기간동안 정신적 창작물(문학, 음악, 예술 등)의 이용을 허여하거나 금지시키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인정해주는 권리를 말한다.²⁹⁾

셋째,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 탄생되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업 저작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복합적 개념), 첨단산업재산권(유전공학, 정보산업 또는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등 첨단기술의 보호), 정보산업재산권(상품정보와 그 정보전달수단에 대한 소유권: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의 보호) 등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공업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산권의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인간에 의하여 사상과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정의하고, 지적소유권은 저작소유권과 공업소유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³⁰⁾ 이에 의하면, 저작소유권은 문학예술분야의 재부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며,³¹⁾ 공업소유권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창조된 발견, 발명, 창의고안, 공업도안, 상표 같은 재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³²⁾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하는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내용은 우리의 산

29) 저작권은 넓은 의미에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 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대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 저작인접권(실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업자 권리 등) 등을 포함한다.

30)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573면.

31)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상,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조된 학술적 저작과 출판물, 소설, 시 등문학작품, 미술작품,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및 그밖의 예술작품과 록음, 록화, 방송 등 예술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위의 사전, 같은 면.

32) 한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는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로 현재의 산업재산권을 설

업재산권³³⁾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I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種類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종류는 크게 특허권(창의고안권, 공업도안권), 발명권, 상표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이에 관하여 개관한다.

1. 特許權

북한에서 특허권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그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법적 권리라고 한다. 이 독점적 권리는 도입이용에 대한 권리일 뿐 아니라 처분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특허권은 그 기술소유자만이 가지게 되는 공개적인 독점적 권리이므로 특허권 소유자의 승인없이 누구도 법적 보호를 받는 그 기술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소유자로부터 특허권 자체나 또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용권을 넘겨받아야 한다.³⁴⁾

한편 북한의 특허권은 “새롭고 실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적 내용을 발명한 자와 새로운 기술을 넘겨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인정해주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발명특허권과 실용신형특허권이 있다고 설명한다.³⁵⁾ 그리고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을 받을 기술을 사용하여 수익·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배타권을 가진다. 따라서 특허기술을 특허권소유자의 허가없이 이용하는 것은 특허권침해가 된다.

북한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바로 발명권이란 개념을 도입하

명하고 있었다.

33) 남한에서 ‘산업재산권’이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무체재화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1990년 3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1990년 3월 이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관보」, 제11476호; 황종환, 「특허법」(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3면.

34) 최승희, 앞의 논문, 61면.

35)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653면.

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發明權

북한에서 발명권은 발명권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특허권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발명권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공업적으로 실현하여 보다 높은 경제적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³⁶⁾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발명한 자는 발명의 창조자로서 발명의 과학적 기술내용과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일정한 국가적 및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발명권과 특허권을 모두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형태로서 발명의 창조자에 대한 인정, 발명내용과 발명의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권리보장 등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대체로 같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등록보호를 청원하는 신청수속절차와 방법, 문건형식, 그에 대한 심의절차와 기준도 거의 같게 되어 있다.³⁷⁾

3. 商標權

북한은 상표권이란 “해당 상표나 봉사표식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고, 이를 보호하는 목적은 기관·기업소·단체의 제품이나 봉사를 다른 기관·기업소·단체의 제품이나 봉사와 식별할 수 있게 하여 그를 통한 독점적인 이익을 얻게 하려는데 있다고 한다.³⁸⁾

북한에서 상표권은 상표등록자가 일정한 기간 정해진 지역에서 등록상표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 권리이며, 이 독점권에는 상표의 이용권, 상표사용의 금지권, 상표의 양도권 등이 포함된다.

36) 위의 사전, 252면.

37) 최승희, 앞의 논문, 62면.

38)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357면.

III. 北韓의 發明權과 特許權의 比較

1. 發明權의 優先的 措置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특허에 관하여 발명권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별도의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공업소유권 가운데 특허권과 발명권을 두고 있는데 특허권 보다 발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에서 개별적인 공민의 기업경영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에서 특허 소유자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발명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개인기업을 창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⁹⁾

요컨대 북한은 발명권과 특허권의 보호형태와 절차를 거의 같은 방식과 절차에 의해 다루고 있지만, 발명권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북한은 발명권제도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⁴⁰⁾ 이는 역으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에서 특허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2. 發明權과 特許權의 差異點 分析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설명에서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1) 發明에 대한 利用權의 所有者의 異同

양자의 차이점은 발명에 대한 이용권의 소유자가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발명권은 발명자가 가지지만 그 이용권은 국가에 속하는 것이

39)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발명권을 위주로 하여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승희, 앞의 논문, 63면.

40) 위의 논문, 62면.

다. 이에 따라 국가는 등록된 발명을 발명자의 승인·합의·계약 등이 없이 마음대로 도입·이용하거나 외국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차이점을 들어 본다.⁴¹⁾

첫째, 발명이용권의 승인제도이다. 북한은 발명권을 받을 발명을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들이 도입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보장하는 법조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개인의 이익이나 순수한 영업적 목적으로 발명이용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발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권리양도의 유무에 관한 차이이다. 먼저 발명권을 받은 사람은 발명권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다. 반대로 특허권의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특허권소유자가 독점, 특허권의 유효기간에는 특허소유자의 승인없이 개인이나 기업소는 물론 국가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특허권 소유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에 완전히 팔거나 그 이용권을 일정한 기간 넘겨줄 수 있다.

이에 비해 등록된 권리의 경우 특허기관에의 등록내용 변경 및 양도의 규제를 받는다. 외국에서 북한 특허기관에 등록을 하고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을 특허무역을 통하여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그에 대해 북한의 특허기관에 통보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북한의 특허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록받은 특허권이나 그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응당 그 권리를 부여한 특허(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제3자로부터의 특허권의 침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셋째, 특허권의 발명권으로의 전환이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비해 유효기간 안에 있는 특허권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1) 이에 관한 설명은 위의 논문, 62~63면.

(2) 效力期間의 異同

권리의 효력기간에 대하여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발명권의 효력기간은 무기한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발명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만, 발명권은 독점 배타적인 재산적 권리보다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인격권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특허권은 15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고 있다.⁴²⁾

(3) 登錄費用의 負擔

양자의 차이점은 발명등록과 관련한 비용부담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특허권의 경우, 신청등록시 신청료, 신소청원료, 변동통지수속료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일단 등록 한 다음에는 특허보호효력기간 내에 매년 적지 않은 보호연금을 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명권의 경우, 등록할 때 신청료 또는 기타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로부터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 특전이 부여된다. 정치 도덕적 특전이란 국가표창·명예칭호수여·국가수훈·기술자격급수승급·표창장 및 휘장수여 등을 의미하며, 물질적 특전이란 상품과 상금수여, 액수는 발명으로 얻어지는 기술 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⁴³⁾

바로 이점에서 북한에서 특허권 보다 발명권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42) 외국의 경우 특허권은 대체로 15~20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43) 위의 논문, 62~63면.

44)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한 설명은 나동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하여”, 「지식재산 21」, 통권 제57호(특허청, 1999) 참조.

IV.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의 特徵

1. 資本主義國家의 特許權과의 差異點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특허권은 자본가들에 거액의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하여 북한의 특허제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설명은 특허권의 보호, 즉 산업재산권 보호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왜곡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설명이다. 이 설명은 북한이 특허권이 “새로운 생산방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그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법적 권리”라고 인정한 것과도 배치되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설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특허권의 개인적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개별적인 공민의 기업경영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북한에서 특허소유자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발명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개인기업을 창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2.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特徵(所有權과의 比較)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라 함은 재산소유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도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지적재산의 소유권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정신노동이 가져온 정신적 재부(財富)에 해당하는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업소유권은 정신적 재부로서 물질적 재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⁴⁶⁾

다음에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다음의 몇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같은 특징을 보면, 우리의 산업재산권이 갖는 특징

45) 즉, 자본가들은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자기의 기술이 새 기술의 출현에 의하여 낡아지고 쓸모없게 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이용하여 다른 자본가들이 새 기술을 생산에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위의 논문, 63면.

46) 위의 논문, 63~64면.

과 그 일반적 성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1) 獨占性

일반적으로 새로운 발명은 공개되기만 하면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발명자가 단독으로 제지하여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발명자는 그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요구하게 되며, 국가로부터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2) 時間的 限界性

물질적 재산의 소유권은 그 물질이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존재하지만, 공업소유권은 그러하지 않다. 공업소유권에 대한 점유는 국가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기한이 지나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공업소유권은 그 자체로 강한 사회성을 가지는 속성에 의해 소수의 사람만이 장기간 이를 점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독점권을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행사하려면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3) 地域性

어떤 특정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업소유권은 보통 그 당해 국가에서만 유효하고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인정한 공업소유권은 국제조약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쌍방조약이 없는 한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제 2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의 法的 保障

I .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國內法的 保護

북한은 공업소유권의 성격상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업소유권 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즉 권리와 의무관계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질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공업소

유권보호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공업소유권보호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이에 의한 질서체계로서 먼저 국내법적인 보호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다음에 북한의 법령에 나타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첫째, 북한헌법상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살펴본다. 북한헌법은 제74조에서 공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명권에 관해서는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하였다. 저작권을 포함하여 북한에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특허권과 함께 발명권을 중시하는 태도를 헌법에 반영하였음을 보여주는 증좌(證左)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현재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른바 상표법, 발명법, 과학기술법,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세칙,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과 세칙 등을 법제화하여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⁴⁷⁾ 이에 관한 설명에 나오는 법령의 명칭이 정확하다면, 그 관련규정의 全文은 완전하게 공표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아직 우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⁸⁾ 물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체계도 변화하였음을 예견할 수 있지만, 북한의 입법체계의 불명확한 현실에 의해 이들 법령들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법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북한의 공업소유권 법령의 분석에 관한 논의를 통해 후술한다.

셋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북한의 민사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1958년 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및 민사소송법초안을 준비하는데 관해서」('제2초안')를 채택하였는데, 이 법령에서 저작권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있었다. 1990년 새로이

47) 최승희, 앞의 논문, 65면.

48) 이 연구의 한계와 전제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입법체계의 불명확성과 법령의 공포의 비공식성은 북한법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 북한은 특정 법령의 제정과 시행사실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그 全文을 공포하기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제정된 현행 민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노동법(1978)은 제49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 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북한에서 발명을 친히하고 창의고안을 장려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형법(1987)은 제98조에서 “탐욕, 질투 그밖에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북한이 형사적 규제를 통하여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관련하여 공업소유권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은 제36조에서 공업소유권제공에 의한 소득⁴⁹⁾은 기업 또는 개인이 내야할 소득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마련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공업소유권의 보호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II.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國際法的 保護

북한의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태도는 형식적으로 북한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현황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대내적인 법정비와 아울러 대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과

49) 이는 공업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여기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소득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59면.

리협약, 특허협력조약 등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외국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발명 및 아이디어 보호의 핵심수단인 특허, 의장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조약 가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파리협약⁵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약의 가입시기는 남한보다 앞서있고, 더욱이 남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마드리드협정,⁵¹⁾ 헤이그협정,⁵²⁾ 로카르노협정⁵³⁾과 같은 조약에

-
- 50)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883). 2001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남한은 1980년 5월 4일, 북한은 같은 해 6월 10일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i)내국민 대우 또는 내외국인 평등원칙, ii)우선권 주장제도, iii)특허, 상표, 의장, 상호, 출처 표시, 부정경쟁, 동맹국의 행정상 의무에 대한 공통규칙 등으로 포함하고 있음.
- 51)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891). 2001년 현재 5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본 협정은 WIPO 국제사무국에 대한 표장(상표와 서비스표)의 국제등록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출원인은 체약국 중의 한 나라의 국민이거나, 체약국 중의 한나라에 주소 또는 이들 국가 내에 실질적인 산업상 혹은 상업상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해 출원인은 본국의 국내 혹은 지역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그 후 출원인은 국내 혹은 지역관청을 통해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국제등록이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표 되고 출원인이 보호받기 원하는 체약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의 경우 베네룩스 상표청)에 통보된다. 당해 체약국(혹은 베네룩스 상표청)은 통보 받은 상표가 동 체약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표장일 경우, 1년 내에 이러한 결정의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선언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선언이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등록은 지정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출원언어도 한가지 언어(프랑스어)로 통일되어 있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 국제사무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안내서」(Guide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를 발간하고 있다.
- 52)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 1925). 헤이그협정 중 현재 시행중인 협정문(Act)은 '1934년 협정문' 및 '1960년 협정문'이며, 2001년 현재 29개국이 양쪽 또는 한쪽 협정에 가입해 있다. 1999년 7월에는 Geneva Act라는 추가협정이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2000년 12월 현재 미발효 상태이다.
- 53)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의장의 국제분류학립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1968). 이 협정은 1968년 체결되었고 1979년에 개정되었다. 2000년 현재 4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의장에 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있는데, 각 체약국의 의장청은 의장의 기탁이나 등록에 관한 공식문서 및 공식 간행물에 적절한 분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체약국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분류의 정기적인 개정작업을 담당한다. 1998년 10월 7번째 개정분류안이 채택되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협정

o] 미 가입한 상태다.

북한의 공업소유권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북한이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조약의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산업재산권제도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다만, 남북한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들의 경우 남북한간에 내국민대우원칙이 무차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당국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⁵⁴⁾

다음에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의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의 가입 현황을 살펴본다.

<남북한의 산업재산권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의 가입현황>

조 약	가 입 일 자	
	남 한	북 한
WIPO 설립협약	1979.3.1	1974.8.17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1883)	1980.5.4	1980.6.10
PCT(특허협력)조약(1970)	1984.8.10	1980.6.10
標章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891)	-	1980.6.10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	1989.6.28
意匠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1925)	-	1992.5.27
意匠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1958)	-	1997.6.6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협정(1957)	1998.10.8	1997.6.6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1977)	1988.3.28	-

상의 분류는 32개의 주분류(class)와 223개의 세분류(sub-clas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당해 상품에 해당되는 주분류 및 세분류가 표시된 상품 리스트가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본 리스트는 각기 다른 종류의 약 6,320개의 상품표시(indications)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38개국만이 본 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나 약 40개국 특허청에서 본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WIPO 국제사무국 및 베네룩스 의장 청도 본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54) WTO/TRIPS 협정과는 달리 이들 조약은 회원국들에 대한 기속력(binding power)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약의 이행여부는 회원국들의 의사에 달려있다.

북한은 공업소유권의 국제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무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활동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권·상표권 등은 그 효력이 엄격히 영역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특허권·상표권 등이 갖는 독점적 권리는 그 권리를 부여한 국가의 영역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즉, 일국에서 발생한 공업소유권은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도입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 독점적 권리를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로써 시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는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은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이 강조하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강화에 기여하여 이른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 이 바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조치는 형식적으로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준수의 표명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규범과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자세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

북한이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에 특허를 출원하는 횟수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곧 북한이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태도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태도의 긍정적 평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며, 남한과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교류협력의 증가와 국제사회에서의 실무적 평가에 의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III. 北韓의 工業所有權 管掌機關

알다시피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의 개편을 이루었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기관체계(통치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정기관에 대한 명칭과 기능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으로 개편되어 해당 행정기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공업소유권의 관장기관에 대해서도

개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북한이 관련기관의 체계는 현행 북한의 행정기관의 개편내용을 고려하여 알아본 것이다.

북한에서 공업소유권에 관한 업무는 남한의 ‘부’(部, Ministry) 단위에 해당하는 내각⁵⁵⁾의 「과학원」(Academy of Science)과 그 산하조직인 「발명(총)국(Invention Office)」과 ‘부’ 단위급 외국(外局)인 「제량 및 품질감독국」 산하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원에서는 특히 및 발명업무전반에 대한 대내외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발명(총)국은 특히, 창의고안, 발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관장하는데, 공업소유권에 관한 출원·심사·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⁵⁶⁾ 상표 및 공업도안의 정책업무는 제량 및 품질감독국 및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발명, 특히의 심사업무는 발명(총)국 산하 발명심의처(소)에서, 상표 및 공업 도안에 관한 심사업무는 상표및공업도안처 소속 상표심사과 및 공업도안심사과 등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55) 북한의 내각은 2개 위원회, 27개 성, 1개 원, 1개 국, 1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 북한연감」(연합뉴스, 2001. 11. 10), 426면.

56) 1986년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는 ‘발명위원회’가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WIPO National Seminar On Trade-marks (Pyongyang, 2000. 5. 4-5) 발표자료에 입각한 권규우, “북한 산업재산권제도 현황 및 남북산 산재권 교류협력방안”, 「지식재산 21」, 통권64호(특허청, 2001. 1), 38~50면에서는 「발명심의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1998년 6월에는 제정된 「발명법」에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은 발명법의全文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7)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업무기구에 대해서는 최근의 북한의 행정기관의 개편과 세부적인 기능분화로 인하여 그 명칭과 업무기능에 대하여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예컨대 북한의 발명총국 산하에는 발명심의처, 발명장려처, 특허대리처, 문현실, 은하수합작회사 등이 있다고 밝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북한상식: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www.nis.go.kr). 한편 북한의 새로운 「발명법」은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사업은 이른바 ‘발명등록기관’, ‘국가과학기술행정 지도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기구는 북한의 관련법령의 분석과 북한의 공업소유권 업무의 실제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위조상표단속을 위해 평양, 양강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나진·선봉 등 전국 주요도시 및 경제무역지대, 도청소재지급 지역에 공업소유권보호와 관련하여 위조상표 단속담당 일군(관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⁸⁾

58) WIPO National Seminar On Trademarks, Pyongyang, (2000. 5. 4-5)
발표자료 중 참가자리트: 권규우, 앞의 논문 재인용.

제 3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關聯法制 分析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74조에서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 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예학술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을 두고 있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관련법률로는 1968년에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⁵⁹⁾을 제정하였고, 1978년에는 「발명 및 창의 고안에 관한 규정」⁶⁰⁾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는 남한의 ‘상표법 및 의장법’과 유사하며, 후자는 남한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대체로 비슷하다. 이를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의 해당부분에서 기술한다.

다음에 이러한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본다. 한편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저작권법을 승인하였다.⁶¹⁾ 북한의 저작권법은 지적소유권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법제로 평가되지만, 공업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논

59) 김일성 교시 포함 총 5장 54조로 구성.

60)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1968. 1. 1.)은 이 후 외국기술 및 자본의 유치 필요성에 따라 1983년 5월 2일 전면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그 후 합영법 실시 등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기술·자본의 유치 필요성에 따라 공업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1986년에 개정되었고(김일성교시 및 김정일 교시 포함 5장 49조로 구성, 1986년 6월 28일개정, 동년 11월 1일 발효: 정무원 결정 제45호). 이 규정은 북한의 국가기관의 개편과 그 명칭의 변화에 의하여 1991년 3월 13일 다시 일부 개정되었다.

61) 북한헌법은 제52조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제74조에서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제98조에서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작품을 묵살하거나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한 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저작권에 관한 독립적인 법령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처음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공업소유권과 다른 개념과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 1 절 北韓의 ‘發明 및 創意考案’에 관한 法令

I. 沿革 및 構成體系

북한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법령에 관해서는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나온 상태이나 그 법령의 전문(全文)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관한 분석은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좀 더 보면, 북한은 1998년 6월에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를 위해 이른바 「발명법」⁶²⁾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발명법의 전문(全文)은 아직 공표되어 있지 않다.⁶³⁾ 또한 북한은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⁶⁴⁾을 새로이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이 규정의 전문(全文)도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그 전문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내용과 체계를 감안할 때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나누어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발명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남한의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 해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발명법」(1998)은, 총 5장 43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명법의 사명과 발명의 개념, 발명사업의 원칙(제1장), 발명등록의 신청절차와 방법(제2장), 발명의 심의등록 절차와 방법(제3장), 발명권과 특허권의 보호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제4장), 발명사업에 대한 통제(제5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⁶⁵⁾ 이

62) 새로운 법의 제정인지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의 개정인지 분명하지 않다.

63) 다만, 북한의 발명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민주조선」(북한의 내각 기관지), 1998년 6월 11일, 2면에 법규해설을 통하여 게재되어 있다.

64) 북한은 내각결정으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개진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강화하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조선」, 2001년 6월 21일, 2면.

와 함께 새로이 채택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총 4장 2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정은 규정의 목적, 창의고안의 개념과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지도단위, 규정의 적용범위(제1장), 창의고안의 신청과 심의, 등록절차와 방법(제2장), 창의고안의 평가(제3장),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4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⁶⁾

이렇듯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은 원칙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의 일반원칙에 입각하되,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총 5장 49개의 조항(제1장-일반규정, 제2장-발명 및 창의고안의 심의등록, 제3장-발명 및 창의고안에 대한 평가, 제4장-발명 및 창의고안의 장려와 도입, 제5장-제재 및 기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명 및 창의고안의 출원 및 등록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별도의 심사청 구결차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II. 概念 및 適用對象

북한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법령에는 발명과 창의고안에 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발명'은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⁶⁷⁾를 말하며,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계설비와 장치, 제품, 기술공정 및 생산방법과 같은 과학기술적 제안들이 속한다(제4조; 조문은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한 '창의고안'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범위에서 지금 있는 기계설비, 장치, 기술공정, 생산방

65) 「민주조선」, 1998년 6월 11일, 2면.

66) 「민주조선」, 2001년 6월 12일, 12면.

67) 「발명법」 해설, 「민주조선」, 1998년 6월 11일, 2면.

법의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성과⁶⁸⁾를 말한다(제5조). 다음과 같은 대상들, 즉 ① 발명과 사회 과학 및 순수자연과학리론, ② 산업미술 및 공업도안, ③ 시설물, 건설물 등의 설계, ④ 계산도표, 표식, 부호, 시간표, 경기규정, 운행규정, 프로그램, ⑤ 경제조직사업 및 기업관리방법, ⑥ 사회도덕에 맞지 않는 제안 등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6조).

발명자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가진다(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한다). 발명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자에게 주는 권리로서(제8조), 발명자는 협행법규범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명권과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발명에 대한 이용권은 국가가 가진다(제9조). 이에 비하여 특허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이다(제10조).

특허권은 발명위원회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5년 동안 효력을 가지며, 특허권의 유효기간에는 특허권소유자의 동의없이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제11조).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해당한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금을 물어야 한다(제12조).

과 같고 같은 발명은 특허권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것은 ① 화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 ② 의약품과 식료품, ③ 동식물의 새 품종과 육종방법 등이다(제13조).⁶⁹⁾

이 규정은 기관, 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제2조), 외국인에게(시행세칙 제2조) 적용되는데, 특허권은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고 발명권은 북한 공민 및 각 기관, 사업소, 협동단체가 이용하고 있다.⁷⁰⁾

68)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해설, 「민주조선」, 2001년 6월 12일, 2면.

69) 1996년 일부 법률개정에 의해 원자핵 반응 및 원자력 기술로 제조된 물질은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권규우, 앞의 논문, 42면.

70) 개별적인 공민은 기업경영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민이 특허권을 소유하더라도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발명을 생산과 전설에 도입하여 개인 기업을 창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III. 權利의 種類

북한에서는 기술내용을 수준에 따라 ‘발명’(큰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갖는 과학기술상의 성과)과 ‘창의고안’(기술혁신)(종래 기술을 강화, 개량하여 보다 나은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상의 성과)으로 나누고,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증이나 특허권을 허여하며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증을 발급해주는 이중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⁷¹⁾ 특허제도는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고, 발명자증제도는 북한주민 및 각 기관, 사업소, 협동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발명자증’이라고 하는 제도는 발명증명서와 함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당해 발명을 할 권리 있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한 규정으로 1978년 규정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독점 배타적인 실시권을 가진 특허권은 허여하지 않고 발명자증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1986년 개정규정은 북한주민들에게도 발명자증의 신청뿐 아니라 특허출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줌으로써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²⁾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발명의 창조자라는데 대한 인정, 발명내용과 발명의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권리보장 등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대체로 동일하다. 또한 국가에 등록보호를 청원하는 신청수속절차와 방법, 문건형식, 그에 대한 심의절차와 기준도 거의 같다.

그러나 발명권과 특허권사이에는 그 성격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음에 그 차이점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발명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우선 발명에 대한 이용권⁷³⁾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데에 있다. 발명권은 발명자가 가지지만 그 이용권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등록된 발명을 발명자의 승인 · 합의 · 계약 등

71) 남한에서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하며,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72) 정상조,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305면.

73) 남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시권’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없이 마음대로 도입이용하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북한에서는 발명권을 받은 발명을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들이 도입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보장하는 법조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반면 개인의 이익이나 순수한 영업적 목적으로 발명이용권을 행사 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발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발명권을 받은 사람은 발명권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다. 반대로 특허권의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특허권 소유자가 독점한다. 특허권의 유효기간 안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이 없이 그 어느 개인이나 기관, 기업소는 물론 국가도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에 완전히 팔거나 그 이용권을 일정한 기간동안 넘겨줄 수 있다.

셋째,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전환할 수 없지만 유효기간⁷⁴⁾안에 있는 특허권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꿀 수 있다. 발명권은 효력 기간이 일반적으로 무기한이지만, 특허권의 효력기간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발명권제도에서 발명자에게는 국가표창과 명예칭호 수여, 국가수훈, 기술자격급수승급 등 명예와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는 기술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따른 상품이나 상금 등 물질적 포상이 주어진다. 발명자중 소유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첫 1년동안 얻어진 이익금의 5~10% 범위에서 발명총국이 정한 금액을 보상받으며 여러 전의 발명자중을 소유한 자에게는 소속기관 추천으로 승진 또는 기술자격인정과 매년 1일간의 연구휴가 혜택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할 대상이 제한되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발명권과 특허권 중에서 발명권을 선택하고 있다⁷⁵⁾.

74) 북한의 경우 15년, 남한은 20년으로 되어 있다.

75) 최정희, 앞의 논문, 62면. 북한의 발명권의 수여에 관한 실체는 “6개의 발명권을 받은 일군”, 『민주조선』, 1998년 8월 12일 참조.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의 비교〉

항목	발명권	특허권
개념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자에게 주는 권리(제8조) 일종의 보상금 청구권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제10조)
권리 행사	발명자는 현행법 규범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명권과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제9조)를 가지며 발명의 이용권은 국가가 가짐(제9조)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 권리 행사 가능, 단 특허된 발명이 국가에 매우 중요한 것인 경우 국가가 특허권을 양도받을 권리나 독점실시권을 가짐
권리취소, 포기	불가능	가능
권리양도	불가능	가능
상호간 전환	특허권으로 전환불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권으로 전환가능 약간의 보상을 받을 권리 행사 가능(시행세칙 제13조)
존속기간	무기한	15년

IV. 主要 內容

1. 特許出願對象

발명은 기계나 설비의 형태, 장치, 합금제품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창의고안(기술혁신)의 경우는 기계설비나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재설계나 강화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다. 즉, 특허 출원의 대상은 기계류의 발명이나 과학적 발견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이어야 한다.

2. 不特許對象

사회과학 및 순수자연과학 이론과 발견, 산업미술 및 의장, 시설 등의

설계, 수식·표장·기호·시간표·놀이규칙·교통규칙, 컴퓨터프로그램, 경제조직 및 회사관리기법(계획, 수익 및 기금, 노동, 원재료 비용산출법, 영업형태의 표준화), 사회도덕에 반하는 제안은 발명이나 창의고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한편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화학물질, 약품 및 음식물, 신식물품종, 동물품종 등에 관한 발명은 불특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1996년 일부 법령 개정에 의해 원자핵 반응 및 원자력 기술로 제조된 물질은 불특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6조 및 13조)

3. 特許登錄要件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발명이란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를 말한다”(제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특히의 요건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발명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경제적 효과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이를 기초로 그 요건의 성격을 살펴본다.

(1) 新規性

‘신규성’이란 과학 및 기술이 아직 일반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다음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선행기술과 특히 원칙 및 방법응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 및 기술적 내용이다.

둘째, 이전기술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원칙, 방법 또는 요소의 합리적인 결합으로부터 결과된 구체적인 원칙, 방법 또는 요소의 공개이다.

셋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기능 또는 성질을 보여주는 기술 및 이에 기초한 이전의 출원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을 응용하는 특정방법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進步性

‘진보성’이란 일반적으로 출원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技術的・經濟的 效果性

‘기술적·경제적 효과성’이란 우리제도상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출원발명이 그 발명과 관계있는 산업분야에서 당장 이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장래 이용할 가능성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特許出願節次

특허나 발명자증을 등록신청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이들로부터 신청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게 있다(제14조). 특허를 받기 원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민은 「평양특허상표대리소」와 「모란봉 특허상표대리소」등 8개의 대리사무소를 통해 발명총국에 출원해야 한다. 출원서에는 발명등록요청서, 요약서, 명세서, 한 개 이상의 청구범위, 한 개 이상의 도면 또는 유사한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6조 및 17조). 이와 함께 발명권 신청자는 발명품이나 견본품, 시료 등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1조).

5. 審査 및 異議申請 節次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없이 심사결정은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등록된 발명은 심사결정 후 발명공보에 공고하며 발명공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공민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원인 또한 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남한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위원회(발명총국)는 출원문건을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접수통지서를 발급해주고 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의 단일성이 유지되도록 매발명마다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하나의 신청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제22조). 선출원주의⁷⁶⁾를 취하는 남한의 경우 출원문건에 이상이 생겨 보정지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출원 서류에 문제가 생겨 보정지시를 받을 경우 보정된 날자만큼 출원일이 순연되므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

심사결과 출원을 거절해야 할 경우는 이유를 명시한 부결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낸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신소청원(불복항고)을 하여야 한다. 등록 결정된 발명은 정기적으로 발명되는 발명공보에 게재된다. 발명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3조)⁷⁷⁾. 외국인은 반드시 평양발명·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출원해야 한다(제16조, 동법 제20조).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약(PCT)에 의거 출원한 뒤 북한내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할 외국인도 위 대리부를 통한 발명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공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6. 制裁

특허나 발명자증의 등록신청시 허위로 과학적·기술적 내용을 조작하거나 발명의 비밀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특허나 발명자증으로 보호되는 발명을 부당하게 실시하거나 특허나 발명자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적 책임으로 경제적 제재가 부과된다(동법 제46조).

상표법에서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상표및공업도안처」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⁷⁸⁾ 특허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특허법이나 상표법에서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등의 민사적 제재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 비하면, 북한에서의 특허나 상표

76) 먼저 상표출원하는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제도. 새로 출원되는 상표중 26%정도는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출원 거부되고 있음.

77) 남한의 이의신청제도와 동일한 제도이다.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제20조 3호, 1991년 3월 13일 시행

등에 대한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명위원회에서 민사적 재판을 하는 사법기능까지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에서의 충분한 산업재산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제 2 절 北韓의 ‘商標 및 工業圖案’에 관한 規定

I . 沿革 및 構成體系

북한은 1968년 1월 1일부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83년 5월 2일 1차개정(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1991년 3월 13일 2차개정을 하였다. 한편 북한은 상표 및 의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1974년 8월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였으며 1980년 6월 10일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각각 가입하였고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에는 1989년 6월 28일 가입하였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상표, 서비스표, 의장제도를 단일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남한의 제도와 다른 주요한 특징은 본래명칭(일종의 원산지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개정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총 5장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⁹⁾

다음에 이 규정에 기초하여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제도를 살펴본다.

II . 立法目的 및 概念定義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상표와 봉사표시(남한의 서비스표에 해당),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상품과 봉사의 질을 보장하고 신용을 담보함으로써 국내외의 시장에서 상품판매를 촉진하며 북한주민의 물질 문화적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동 규정의 기본목적

79) 이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와 봉사표시, 제3장: 공업도안, 제4장: 본래 명칭, 제5장: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으로 명시하고, 상표, 봉사표시⁸⁰⁾, 공업도안⁸¹⁾, 본래명칭⁸²⁾ 등에 대한 권리보호와 상품과 봉사의 질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였다(제1조).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표와 봉사표시,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기관·기업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다(동규정 제2조). 상표, 서비스표, 공업도안, 본래명칭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의 지시와 감독은 상표 및 공업도안처가 맡는다(동규정 제3조). 그리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해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간이며 권리기간 만료 후 개신이 가능하다(동규정 제21조).

북한에서 상표란 ‘한 기관·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동규정 제4조)를, 봉사표시란 ‘한 기관·기업소의 봉사를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를 의미한다(동규정 제5조). 그리고 상표와 봉사표시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것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상표에는 품명, 규격, 치수, 용량, 등급, 용도, 가격, 생산날짜, 검사번호 등을 명기한다. 상표와 봉사표시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들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추가로 이들과 색깔과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동규정 제6조).

이에 비하여 남한의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북한과 달리 색채상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III. 商標制度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상표란 한 기관, 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기업소의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며, 글자·그림·조각 혹은 이것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

80) 남한의 서비스표와 유사함.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시계수리업으로의 「황금당」을 예로 들 수 있다.

81) 남한의 의장과 유사함.

82) 남한의 원산지 표시와 유사함.

의하고 있다(동규정 제4조 내지 6조). 상표권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동규정 제21조).

1. 商標出願 主體 및 對象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상표와 봉사표시(서비스 표), 공업도안(의장)과 본래명칭(원산지표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상품과 봉사의 질을 보장하고 신용을 담보함으로써 국내의 시장들에서 상품판매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증진에 적극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와 봉사표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이하 기관, 기업소라고 함) 및 공민은 상표나 봉사표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북한에서 개인도 상표출원이나 서비스표 출원을 할 수 있다.

여러 기관, 기업소가 만든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같이 할 수 있으며 그 상표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공유출원가능). 위에서 정의된 상표의 개념에 부합하는 모든 것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근거해서 북한의 조직과 기업은 모두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상이한 상표와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표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동규정 제7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해진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경우

둘째,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

셋째,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우로 북한에 이미 알려진 경우

넷째, 국가 혹은 정부기구의 상징과 표시, 깃발, 국장, 국호 및 그 약어로 표시된 경우로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다섯째, 사회주의법, 질서, 도덕, 관습과 대중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것

여섯째, 국제조약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 등이다.

2. 登錄要件

북한에서는 “상표의 우선권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먼저 상표및공안도안처에 낸 기관, 기업소에 준다”(동규정 제13조)고 하여 선 출원상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거절된다. 또한 「한 분류의 상품에 적용될 상표등록신청문건에 여러 개의 상표를 포함시킬 수 없으며 매 상표별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1상표 1출원 원칙에 어긋나는 상표출원도 거절된다.

상표및공업도안처로부터 상표등록신청문건이 불비하다는 통지서를 받고 3개월이내에 해당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신청문건은 부결된다. 방식심사에 따른 보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출원은 무효가 되므로 역시 등록 받을 수 없다(동규정 제16조).

3. 出願 및 審査節次

북한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또, 조약당사국의 국민이 자국에 출원한 상표를 북한에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8조). 파리조약가맹국이 인정한 전람회에 전시된 상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우선권일자는 전람회가 시작된 날로 하며 전람회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람회에 참가한 보증문건을 상표등록신청문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기관, 기업소의 상품들과 봉사들에는 하나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1개의 상표등록 문건에 상표, 서비스표 출원가능) 상품들과 봉사들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매 상품류 별로 하나씩 출원할 수도 있고 일개출원에 복수의 상품류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북한은 소위 다류일출원(Multi Class Application)이 인정되고 있다. 출원관납료에서도 기본류(Basic class)하나에 얼마씩 「료금」을 내고 추가료 (Additional class) 하나당 얼마씩 「료금」을 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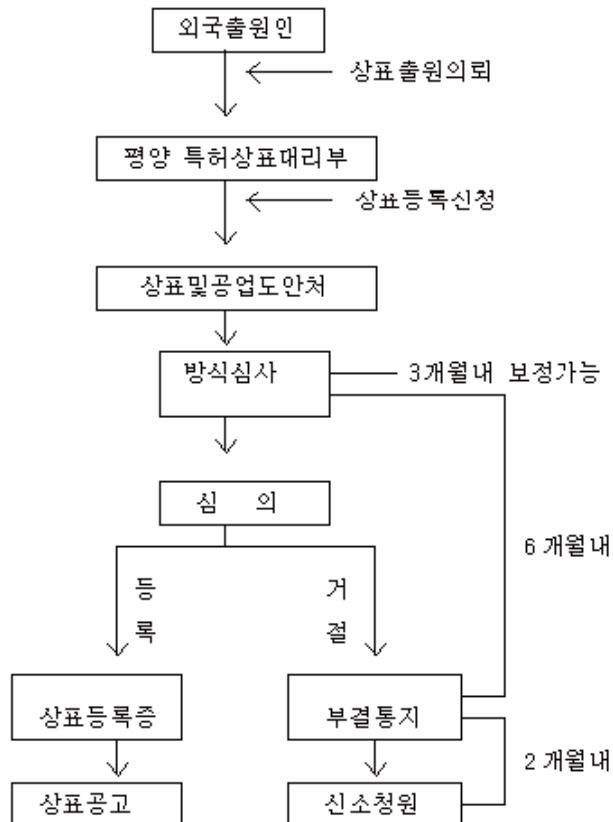
북한에서도 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먼저 거친다. 즉,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낸 신청문건이 불비할 때에는 그 문건을 반환하지 않고 신청문건이 불비하다는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이때 3개월내에 해당한 자료를 내야 신청문건을 접수한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 신청문건은 부결된다.

상표및공업도안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6개월내에 심의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조선상표」라는 공보를 게재한다. 이의신청규정은 없으나 법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는 상표등록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등록 부결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상표및공업도안처 또는 법기판에 신소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동규정 제29조).

남한에서는 상표출원이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거절사정을 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는 신소청원(항고)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북한의 상표대리기관(평양발명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동규정 제51조). 필요서류에는 위임장, 본국 출원 또는 등록 원부, 법인등기 부등본이 있다. 그리고 1983년 규정에서는 사용언어는 조선어를 기본어로 하고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도 사용 가능했으나 1991년 개정규정에서는 조선어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동규정 제11조). 외국인 신청자는 자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국내에서 발행한 우선권사본과 함께 북한에 출원신청할 경우 북한에서의 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동규정 제14조).

<북한의 외국출원인의 상표출원절차>



한편 상표출원에 관련하여 북한은 국제상품분류에 관한 NICE협약상의 상품분류에 따라 출원해야 하며 1상표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매상품별 종류별로 하나씩 출원할 수도 있고 일개출원에 복수의 상품류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출원서류는 과학원 산하 상표및공업도안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표등록여부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상표등록은 등록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5년간 불사용시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동규정 제27조)⁸³⁾.

그리고 봉사표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도 상표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국

83) 상표등록이 취소되는데 따라 상표권을 상실한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은 부당한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나타난 후과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28조).

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어 마드리드루트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표출원공고결정제도와 공중의 이의신청제도가 없는 점은 남한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심사 후 바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며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소청원에 의해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商標權

북한에서 상표의 권리자는 그것을 등록 받은 기관, 기업소과 공민(즉, 상표권의 소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상표및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제20조에서 상표권소유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째, 상표권소유자는 등록된 상표를 해당한 상품 및 봉사에 쓸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 상표권소유자의 승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상표권소유자는 다른 기관 기업소 및 개인에게 상표의 부분 또는 완전이용에 관한 양도 또는 허가증(사용권)을 줄 수 있다.

셋째, 상표권소유자는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제 3 자가 비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시킴에 대한 요구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북한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별도의 사법기관이 아닌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존속기간은 상표및공업도안처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매번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그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상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권보호기간내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내용을 언급한 변경신청서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동규정 제

21조, 제22조, 제23조)...

5. 商標權의 讓渡 · 使用權 · 拋棄 · 取消

상표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사용권(라이센스)을 허여할 수 있다. 북한상표법에서는 사용권을 「허가증」이라 칭한다. 상표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나 사용권을 허여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공동신청서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공동신청서에 쌍방이 서명한 양도증이나 허가증 및 위임장을 첨부하면 된다(동규정 제24조).

상표권의 양도등록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 상표권은 일반승계(넘겨받거나 합쳐졌을 때)도 인정된다(동규정 제25조). 그러나 상표권은 이전사유로서 상속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표권은 상표권 소유자의 폐기신청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상표권에 대한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 i) 이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하였을 때
- ii) 등록된 상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표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을 상실한 기관, 기업소 또는 공민은 부당한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동규정 제27조).

IV. 工業圖案制度

북한에서 공업도안이라 함은 제품의 특별한 형태와 장식, 색조화 등으로 제품의 외형을 새롭게 묘사한 것을 말하며, 약간 한 변화 혹은 명백하지 않은 변화는 새 공업도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30조). 공업도안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제반업무는 상표업무와 마찬가지로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동규정 제31조).

그리고 불등록대상인 공업도안으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 i)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것,
- ii)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 iii) 출판물을 통하여 알려진 것,

iv) 먼저 전람회에 공업도안이 나가 있을 때 그와 유사한 공업도안이 신청으로 제기되는 것 등이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년이며 공업도안이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해당 공업도안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에 권리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36조, 제38조).⁸⁴⁾

V. 本來名稱制度

북한에서 본래명칭이라 함은 제품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나라, 지역, 지방의 이름을 지칭한다(동규정 제40조).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 보호제도와 유사하며 등록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북한의 본래명칭에 관한 업무는 역시 상표및공업도안처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래명칭신청문건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때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된 본래명칭은 법적 보호를 보장받게 된다(동규정 제44조, 제46조).

그러나 본래명칭에 관한 권리존속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들의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에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48조).

제 3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制度와 南韓의 產業財產權制度 比較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6. 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남북한간에는 재화에 화체되어 유통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만큼 기업체의 북한내 산업재산권 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국내외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남한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출원서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까지 남한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련한 직접 출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84) 특히, 상표와는 달리 권리주체로서 공민(개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난북간 이행실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간 경협보장 4개합의서는 서로 각기 국내적 절차를 거친 후 문본을 교환한 후 발효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분야 교류확산과 당국자간 세부합의서 마련, 그리고 통일단계에서의 법제도 통합도출을 위한 과제로 남북한간의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제도의 체계와 내용을 간략하게 서로 비교 분석해 본다.

I . 南北韓의 產業財產權制度의 體系

1. 北韓의 工業所有權制度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공업소유권의 국내외적 보호법제를 갖추고 있다. 국내법제로는 헌법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법, 형법,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제에도 공업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은 제74조에서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으로는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과 「발명 및 창의 고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법령 중 전자는 남한의 '상표법 및 의장법'과 유사하고, 후자는 남한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전문(全文)이 공표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나 1998년 6월에는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를 위해 「발명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2001년에는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새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들 법령은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다.

2. 南韓의 產業財產權 制度

남한의 산업재산권 제도로는 1946년 10월 5일 미군정령 제91호에 의해 제12장 제265조로 된 「특허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발명특허, 실용특허, 미장(美匠)특허 등을 규정하였다. 「상표법」은 1949년 11월 28일 별

도로 제정되었다.

이후 5·16군사정부는 1961년 12월 31일 「특허법」(법률 제 950호),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의장법」(법률 제951호)을 각기 단행법으로 제정하였고, 「상표법」은 1963년 3월 5일 1949년법을 법률 제1295호로 개정하게 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산업재산권법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2월 3일 「특허법」(법률제6411호), 「실용신안법」(법률제 6412호), 「의장법」(법률제6413호), 「상표법」(법률제6414호)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산업재산권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 산하에서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다.⁸⁵⁾

3. 南北韓의 產業財產權保護에 대한 國際法的 態度

북한은 대내적인 법정비와 아울러 대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⁸⁶⁾ 파리협약(PARIS Convention),⁸⁷⁾ 특허협력조약(PCI T)⁸⁸⁾ 등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외국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⁸⁹⁾ 파리협약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약의

85) 「정부조직법」 제37조제5·6항.

8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883년 설립. 발명, 상표, 실용신안, 도서, 음악, 영화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원칙에 기반해 21개 (15개 산업재산권 관련, 6개 저작권관련)의 파생국제조약이 성립되었다.

87) 1883년 발효. 지적재산권관련한 최초의 협약으로 각국의 산업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협약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 출원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우선권주장 기간 내에 협약가맹국에 출원할 경우 국내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권을 협약가맹국으로부터 보장받는다.

88)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년 발효. 동조약에 가입한 국가간의 특허출원을 쉽게하기위한 제도이다. 출원인이 출원희망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지정된 국가로부터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원대상에 대한 사전 국제예비심사,조사의 기능이 있어 평가나 보완의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89)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최근 동향에 관해서는 高倉成男, 「知的財產法制と

가입시기는 남한보다 앞서고, 남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마드리드협정, 헤이그협정, 로카르노협정 같은 조약에도 가입함으로써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인 태도는 이에 관한 국제조약의 가입이란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이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얼마만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최근 북한이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허출원을 증대하고 있다는 통계는 북한이 외국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궁정적인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조약의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산업재산권제도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남북한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들의 경우 남북한간에 내국민대우 원칙이 무차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당국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바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남북간 산업재산권 보호 및 교류협력방안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남북한의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의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II. 南北韓의 特許制度 比較

1. 北韓의 特許制度 概觀

(1) 概 要

남한의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 해당하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총5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명 및 창의고안의 출원 및 등록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⁹⁰⁾ 이에 관해

『國際政策』(東京: 有斐閣, 2001), 97~108頁.

90)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나, 그 전문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은 북한의 발명

서는 앞서 설명하였으나, 남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개략적인 내용 설명을 한다.

이 규정은 기관, 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 및 북한 공민에게 적용된다(동 규정 제2조). 이 규정에 의하면 발명에 대해 발명권과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중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동규정 제7조).

우선 발명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자에게 주는 권리이며(동규정 제8조) 발명자는 현행법규범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명권과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발명에 대한 이용권은 국가가 가지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9조).

한편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특허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한다(동규정 제10조). 이에 비하여 발명권이란 발명권자에게 '발명증서'와 함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당해 발명을 할 권리 있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종전에는 외국인에게는 특허를 부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발명자증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1986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들에게도 발명자증의 신청뿐 아니라 특허출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특허권보다 발명권을 우선하는 북한의 정책적 제도에 의하여 자유로운 특허권 행사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특허권 대신에 국가 표창과 명예칭호 수여, 국가자격급수 승급, 발명상금 등 물질적 포상이 주어지는 발명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¹⁾

및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91) 국가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출원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과 특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북한주민의 경우 실시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는 발명권을 선택하게 되고, 외국인의 경우 권리보호 측면에서 특허권을 선호한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발명권을 획득한 주민에게는 '발명자증'과 함께 발명수준에 따라 금·은·동메달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텔레비전, 녹음기, 상금(북한돈 최고 3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받는다고 하며, 여러 건의 발명으로 국가에 이익을 준 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추천으로 승진 또는 기술자격을 인저받고 원하는 경우 매년 10일간의 연구휴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2) 特許出願節次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요구하는 신청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발명위원회에 내야 한다(동규정 제15조).⁹²⁾ 출원서에는 발명등록신청서, 발명개요, 발명에 대한 기술설명서, 발명주장범위 및 그림 등이 있어야 한다(동규정 제17조). 이와 함께 발명권 신청자는 발명품이나 견본품 또는 시편, 시료 등을 신청문건과 함께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동규정 제21조).

(3) 不特許對象

사회과학 및 순수자연과학 이론과 발견, 산업미술 및 의장, 시설 등의 설계, 수식·표장·기호·시간표·놀이규칙·교통규칙, 컴퓨터프로그램, 경제조직 및 회사관리기법(계획, 수익 및 기금, 노동, 원재료 비용산출법, 영업형태의 표준화), 사회도덕에 반하는 제안, 화학물질, 제약품 및 음식물, 신식물품종, 동물품종 등에 관한 발명은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6년 일부 개정에 의해 원자핵 반응 및 원자력 기술로 제조된 물질은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동규정 제6조 및 13조).

(4) 審查 및 異議申請 節次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없이 심사결정은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등록된 발명은 심사결정 후 발명공보에 공고하며 발명공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원인 또한 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심의처(발명총국)는 출원문건을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접수통지서를 발급해주고 발명공보에 게재한다. 발명의 단일성이 유지되도록 매발명마다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하나의 신청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동규정 제22조).

한편 북한에서는 출원서류에 문제가 생겨 보정지시를 받을 경우 보정된

92) 권규우, 앞의 논문 42면에서는 ‘특허를 받기 원하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은 “평양 특허 및 상표대리소”와 “모란봉 특허 및 상표대리소”등 8개의 대리사무소를 통해 발명 총국에 출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날자만큼 출원일이 순연되므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 심사결과 출원을 거절해야 할 경우는 이유를 명시한 부결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낸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신소청원(불복항고)을 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남한의 경우 선출원주의⁹³⁾를 취하기 때문에 출원문건에 이상이 생겨 보정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등록 결정된 발명은 정기적으로 발명공보에 게재된다. 발명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규정 제23조). 외국인은 반드시 평양발명 · 특허상표대리부⁹⁴⁾를 통해 출원해야 한다(동규정 제16조, 시행규칙 20조).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약(PCT)에 의거 출원한 뒤 북한내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할 외국인도 위 대리부를 통한 발명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공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5) 特許登錄要件

북한에서도 발명에 있어 신규성 · 진보성 · 응용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은 과학 및 기술이 아직 일반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선행기술과 특히 원칙 및 방법응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 및 기술적 내용, 이전기술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원칙, 방법 또는 요소의 합리적인 결합으로부터 결과된 구체적인 원칙, 방법 또는 요소의 공개,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기능 또는 성질을 보여주는 기술 및 이에 기초한 이전의 출원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을 응용하는 특정방법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남한 제도상 개념과 유사하다. 그리고 응용성은 탁월한 기술 및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의미

93) 이는 먼저 상표출원하는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법 제36조제1항). 남한의 경우 새로 출원되는 상표 중 약 26%정도가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출원 거부되고 있다고 한다.

94) 북한에는 평양특허 및 상표대리소, 모란봉특허 및 상표대리소 등 8개의 대리소가 있다고 하며, 외국인은 반드시 이를 대리소를 통하여 발명총국에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있다.

2. 南韓의 特許 및 實用新案 制度 概觀

(1) 概 要

먼저 ‘특허’란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발명자는 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그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심사 받고 특허를 등록 받은 후 일정한 기간동안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허권의 행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되어 있다.

다음 ‘실용신안’은 물질이나 방법을 제외한 물건의 형상 및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새로운 고안으로 특허보다 진보성이 낮은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실용신안은 1999년 7월부터 무심사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에 대한 독점권 행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 그 자체이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에 있다는 점이다. 고안과 발명이라는 문구 자체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의 개념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뜻하고, 발명은 고도성의 개념을 부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조제1호).⁹⁵⁾

(2) 出願後 登錄節次

남한의 특허법상 특허출원후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등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소정양식의 특허출원명세서, 출원 등록대행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5) 李秀雄, 「特許法」(삼선, 2001), 39면.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번호통지서가 출원인에게 통보된다. 출원된 특허는 1년 6월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그 내용이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에 공개될 수도 있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권을 설정을 등록하게 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게 된 때부터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의 발명실시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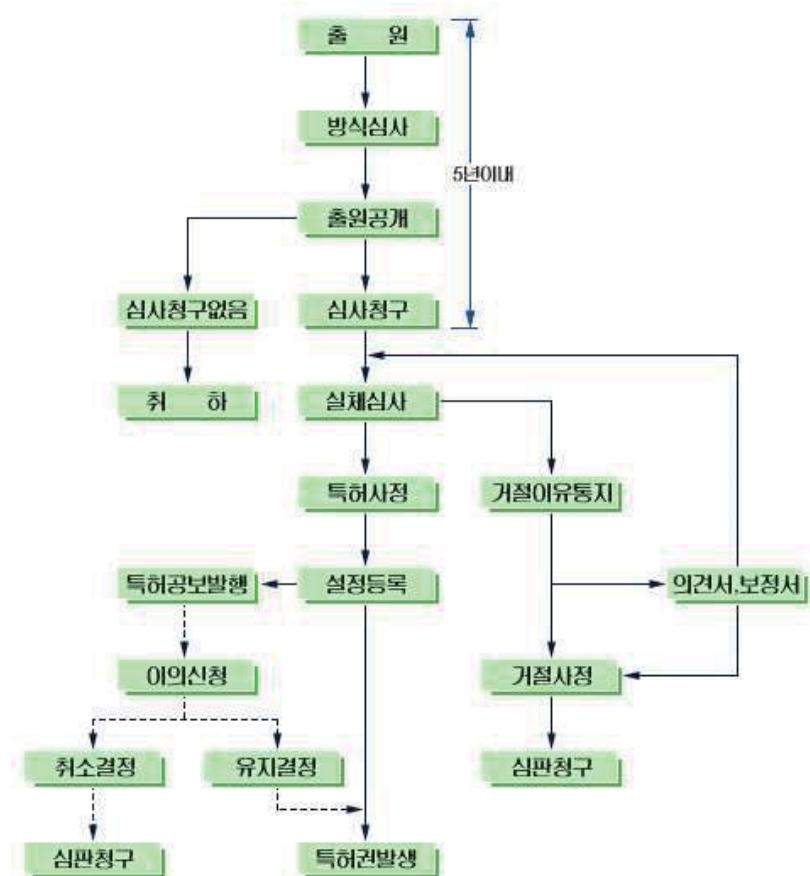
출원된 특허는 통상 1년 6개월~2년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통보 받게 되는데,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극복 할 수 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사정을 받게 되는데, 출원인은 이때 이에 불복하는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특허사정되며, 특허사정을 통지 받은 출원인은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등록 공고되며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등록된 특허는 취소되고, 이유가 없으면 그 특허는 유지된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취소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심판에 의해서 다시 특허등록 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후 등록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출원후 등록절차〉



그리고 앞서 기술한 남북한의 특허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특허법 주요사항 비교〉

항 목	남 한	북 한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실용신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986) • 발명법(1998) •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2001)
출 원 심사기관	특허청 기술심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발명심의처(발명총국) • 심사기관: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침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침해금지청구권(법 §126), 손해배상청구권(법 §128), 신용회복조치(법 §131),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741) • 형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명문없음 • 형사: 권리침해, 허위표시, 비밀누설시 해당 법적책임(규정 §45) → 권리침해시 3년이하 노동교화형 (북한형법 §98)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일로부터 20년(법 §88④) • 실용신안은 출원인 10년(법 §36) 	• 발명 및 창의고안 출원일로부터 15년(규정 §11)

III. 南北韓의 商標制度 比較

1. 北韓의 商標制度 概觀

(1) 概要

북한은 1968년 1월 1일부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83년 5월 2일 1차개정(6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1991년 3월 13일 2차개정을 하였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상표, 서비스표, 의장제도를 단일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제도에 없는 주요한 특징은 본래명칭(일종의 원산지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개정된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모두 5장 54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상표와 봉사표시(남한의 ‘서비스표’에 해당),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상품과 봉사의 질을 보장하고 신용을 담보함으로써 국내외의 시장에서 상품판매를 촉진하며 북한주민의 물질문화적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동규정의 기본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조에서 상표·봉사표시, 공업도안, 본래명칭 등에 대한 권리보호와 상품과 봉사의 질에 대한 보장과 신용담보를 통하여 국내외시장에서의 상품판매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기관·기업소·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공민(개인)도 포함하고 있다(동규정 제2조). 그리고 상표, 서비스표, 공업도안, 본래명칭 등에 관한 전반사업은 상표및공업도안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3조).

한편 북한에서 ‘상표’란 “한 기관·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제4조)를 의미하며, ‘봉사표시’란 “한 기관·기업소의 봉사를 다른 기관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라고 명시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상표에는 품명, 규격, 치수, 용량, 등급, 용도, 가격, 생산날짜, 검사번호 등을 명기한다. 상표와 봉사표시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들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추가로 이들과 색깔과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제6조).

이에 비해 남한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것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남한의 상표의 개념은 북한과 달리 색채상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商標制度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상표란 한 기관, 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 기업소의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며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것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4조 내지 6조). 북한에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대해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표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며 권리기간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제21조).

1) 商標出願 主體 및 對象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서 “상표와 봉사표시,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상품과 봉사의 질을 보장하고 신용을 담보함으로써 국내의 시장들에서 상품판매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증진에 적극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와 봉사표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이하 ‘기관, 기업소’) 및 공민은 상표나 봉사표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개인도 상표출원이나 서비스표 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제9조에서 “여러 기관, 기업소가 만든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같이 할 수 있으며 그 상표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출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파리협약의 가맹국의 국민은 북한국민(기관, 기업소포함)과 같은 상표등록출원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50조). 이 경우에 북한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다른 나라 국민이 북한에 상표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일체 수속업무를 북한의 상표대리기관(평양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51조). 즉, 북한에 거주하지 않은 한 남한인도 외국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직접 상표및공업도안처에 상표출원물건을 제출할 수 없다.

위에서 정의된 상표의 개념에 부합하는 모든 것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근거해서 북한의 조직과 기업은 모두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상이한 상표와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표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등록대상도 열거하고 있다(동규정 제7조).

북한의 이러한 부등록대상을 남한의 규정과 비교해보면, 남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 지리적 명칭, 혼한 성명, 간단한 표장 등의 절대적 부등록사유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상표법은 절대적 부등록사유를 두고 있는 이유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登錄要件

북한에서는 “상표의 우선권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먼저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낸 기관, 기업소에 준다”고 하여 선 출원상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거절된다. 또한 “한 분류의 상품에 적용될 상표등록신청문건에 여러 개의 상표를 포함시킬 수 없으며 매 상표별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1상표 1출원 원칙에 어긋나는 상표출원도 거절된다.

상표및공업도안처로부터 상표등록신청문건이 불비하다는 통지서를 받고 3개월이내에 해당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신청문건은 부결된다. 방식심사에 따른 보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출원은 무효가 되므로 역시 등록 받을 수 없다.

3) 出願 및 審查節次

북한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조약당사국의 국민이 자국에 출원한 상표를 북한에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제8조에서 “기관, 기업소의 상품들과 봉사들에는 하나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1개의 상표등록 문건에 상표, 서비스표 출원가능) 상품들과 봉사들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매 상품류 별로 하나씩 출원할 수도 있고 일개출원에 복수의 상품류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북한에서의 출원서의 방식심사의 방법과 절차, 외국인의 출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북한은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이른바 마드리드루트에 의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상표출원공고결정제도와 공중의 이의신청제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4) 商標權

상표의 권리자는 그것을 등록 받은 기관, 기업소과 공민(즉, 상표권의 소유자)에게 준다. 상표권소유자는 등록된 상표를 해당한 상품 및 봉사에 쓸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 상표권소유자의 승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상표권소유자는 다른 기관, 기업소 및 개인에게 상표의 부분 또는 완전이용에 관한 양도 또는 허가증(사용권)을 줄 수 있다(동규정 제20조).

또한 북한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기관이 별도의 사법기관이 아닌 상표및공업도안처에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20조의 3). 상표권존속기간은 상표 및공업도안처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매번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동규정 제21조).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그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상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동규정 제22조). 그러나 상표권보호기간내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내용을 언급한 변경신청서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동규정 제23조).

5) 商標權의 讓渡 · 使用權 · 拋棄 · 取消

북한에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사용권(라이센스)을 허여할 수 있다.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용권(라이센스)을 '허가증'이라 칭한다(제24조). 상표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나 사용권을 허여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공동신청서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공동신청서에 쌍방이 서명한 양도증이나 사용권계약서(허가증) 및 위임장을 첨부하면 된다.

상표권의 양도등록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 상표권은 일반승계('넘겨받거나 합쳐졌을 때')도 인정된다(동규정 제25조). 그러나 상표권은 이전사유로서 상속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표권은 상표권 소유자의 폐기신청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상표권에

대한 취소는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27조).

한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을 상실한 기관, 기업소 또는 공민은 부당한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규정 제28조).

2. 南韓의 商標制度 概觀

(1) 概 要

한국에서 ‘상표’라 함은, 타인의 상품과 자기의 것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각각에 색채를 결합할 수 있다.

한국의 상표는 상품 34개류와 서비스 8개류에 대하여 국제분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분류표상 1개 이상의 지정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류표상의 유별제목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多類 1出願制度

동일한 1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출원에서 2개 이상의 유별에 걸쳐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3) 優先權

파리조약에 의거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출원은, 그 출원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와 같은 우선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4) 登錄要件

특정의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상표는 법정의 절차적, 주체적 및 객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절차적 요건’이란, 출원의 형식에 관한 요건으로, 출원인은 행위 능력을 가진 자 이어야 하고(특허법 제3조), 대리인에 의한 출원의 경

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특별수권(特別授權)이 있어야 하고(특허법 제6조), 출원이 법정의 방식에 적합하여야 하고(상표법 제9조) 그리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말한다. 또한 ‘주체적 요건’이란, 상표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자격), 즉 권리능력에 관한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객체적 요건’이란 상표의 구성자체가 상표법상의 상표이어야 하고(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동법 제6조)⁹⁶⁾ 그리고 공익 또는 제3자와의 공평한 이익조정을 위한 부등록사유(동법 제7조)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말한다.

(5) 商標出願 및 登錄節次

1) 檢 索

검색은 출원절차에서 필요사항은 아니며, 출원인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등록여부를 가늠하는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예기치 않고 등록 불허되는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최근 출원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2) 出願節次

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상표견본 및 출원인의 서명날인한 위임장이다. 이 때 필요한 기재내용은 ① 구체적인 지정상품 및 류별, ② 출원인의 풀네임과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이름), ③ 출원인의 국적, ④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출원의 자료 등이다.

누구든지 상표출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96) 상표법에서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 식별력없는 경우의 구체적 예를 들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표시된 상표, ② 관용상표, ③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 등의 기술적 상표,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⑤ 혼합성 또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⑥ 간단하고 혼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⑦ 인사말, 구호, 슬로건 등이다. 이 중에서 종전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아무리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에서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다. 그러나 한국에 주소나 거소(법인인 경우 사무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

3) 方式審查

출원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에서 서류양식에 대한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서식에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정통지서가 발부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미비사항을 제출하면 방식심사는 통과된다.

4) 內容審查

내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출원시점부터 대략 1년을 전후해서 심사관에 의한 내용심사가 이루어진다.
- ② 내용심사시 한국상표법 제6조 및 제7조등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공고 결정된다.
- ③ 그러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된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공고 결정되지만, 극복되지 못하면 거절 사정되고, 거절사정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거절사정이 확정된다.

5) 公告決定 및 異議申請

상표가 공고 결정되면 그 상표는 곧 상표공보에 게재되며, 공고 게재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사정된다. 그러나,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 상표에 대한 포기의사가 없는 이상,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의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서 결정 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승소하면 등록사정되지만 패소하면 거절사정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제기하지 않으면 거절사정이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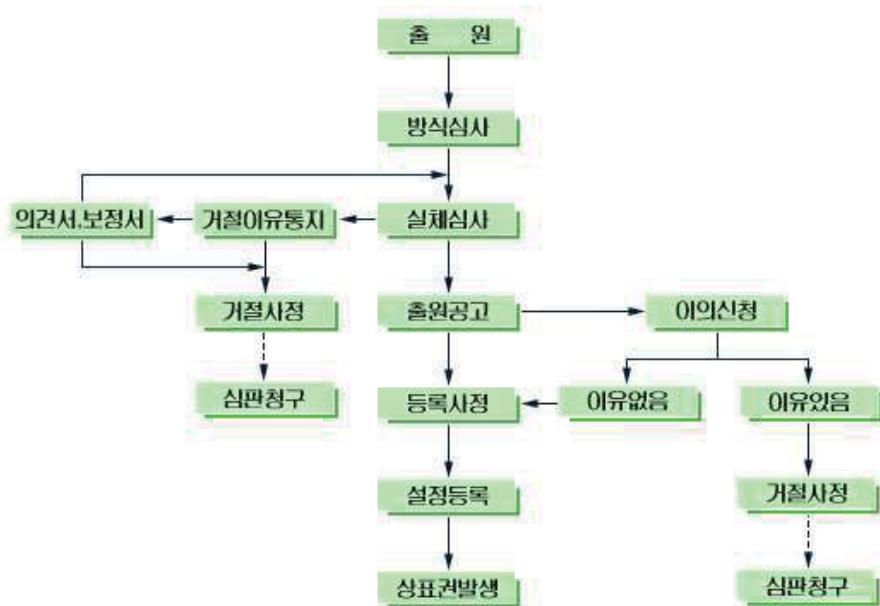
6) 登 錄

등록사정되면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되며, 곧 등록증이 발부되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7) 存續期間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이다. 등록일로부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심사는 무심사이므로, 갱신등록출원은 조속한 시기에 등록완료된다.

〈상표출원절차〉



3. 審判制度

심판제도는 3심제이며, 1심은 특허심판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그리고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심사관의 심사에 대하여 출원상표가 거절사정되면,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취소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심판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서 판시내용에 법률적용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 3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關聯法制 分析

다음에 남북한의 상표출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비교해본다.

〈남북한의 상표법 주요사항 비교〉

항 목	남 한	북 한
관련 법령	상표법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상표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를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표장). (법§2 ①-1) 서비스표도 상표로서 상표법상 보호(§2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상표란 한 기관, 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 기업소의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 §5 : 봉사표시란 한 기관, 기업소의 봉사를 다른 기관, 기업소의 같은 봉사와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 §6 : 상표와 봉사표시(이 아래부터는 상표라 한다)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것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깔과의 결합으로 표시한다.
등록 부처	특허청	· 상표 및 공업도안처
부등록 사유	<p>법§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국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② 국가·민족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상표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④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⁹⁷⁾ ⑤ 박람회의 상패·장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등의 상표 ⑦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 ⑨ 주지상표 ⑩ 저명상표 ⑪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 ⑫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⁹⁸⁾ ⑬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 상표⁹⁹⁾ ⑭ WTO 가입국내의 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로 된 상표¹⁰⁰⁾ 	<p>규정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해진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경우 2. 다른 기관, 기업소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3.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로서 우리나라에 이미 알려진 경우 4. 국가 혹은 정부적 기구의 상징과 표시, 기발, 국장, 국호 및 그의 간략표시 등이 관계 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5. 우리나라 사회주의법, 질서, 도덕, 관습과 대중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것 6.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제내용과 모순되는 것
침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침해금지청구권(법§65),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권(민법§750), 신용회복청구권(법§69),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741) - 형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20③) - 등록취소후 사용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재제(§28)
출 원	1상표 1출원주의, 다류 1출원주의	동일
권리의 소멸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무효심결이나 취소심결의 확정에 의해 소멸됨, 그러나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음	포기, 폐기신청, 존속기간의 만료, 규정위반 또는 5년간 불사용에 따른 취소처분
존속 기간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동일

IV. 南北韓의 意匠制度 比較

1. 北韓의 工業圖案(意匠) 制度 概要

북한의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업도안'은 제품의 특별한 형태와 장식, 색조화 등으로 제품의 외형을 새롭게 묘사한 것을 말하며, 약간 한 변화 혹은 명백하지 않은 변화는 새 공업도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제30조). 공업도안의 출원 및 등록등에 관한 제반업무는 상표업무와 마찬가지로 상표및공업도안처에서 관장한다 (동규정 2제31조). 그리고 부등록대상인 공업도안은 i)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것, ii)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iii) 출판물을 통하여 알려진 것, iv) 먼저 전람회에 공업도안이 나가 있을 때 그와 유사한 공업도안이 신청으로 제기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동규정 제34조). 공업도안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년이며 공업도안이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해당 공업도안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에 권리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36조).¹⁰¹⁾

-
- 97) ①국제간의 선린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② 상표의 구성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문자나 도형을 읽는 방법 또는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외설적인 인상을 주거나 성적홍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상표(예 : Smuggler,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등 공중도덕 감정을 저해하는 상표)
 - 98)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97. 8개정법 신설)
 - 99)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자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97. 8 개정법 신설) 이는 입체상표의 도입에 따른 조치로서 입체상표중 그 상품 또는 포장의 기능적 특성만을 나타낸 입체상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00) 「WTO 가입국내의 포도주 및 종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종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97. 8 개정법 신설)
※ 포도주 및 종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TRIPs상의 규정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다.

2. 南韓의 意匠制度 概觀

(1) 出願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작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이를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장창작자가 일단 창작한 의장을 도면에 표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하 심사를 거쳐 의장등록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독점베타적으로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의장권의 행사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의장은 모방이 쉽고 유행에 민감하며 그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는 특징 때문에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도 등록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물품, 즉 직물지나 벽지 등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등록되기도 한다.

(2) 出願書類

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의장의 내용을 기재한 소정양식의 의장등록출원서, 출원등록대행을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공증 필요 없음), 우선권 서류(파리조약 가입국의 선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이다.

(3) 出願 後 登錄節次

의장등록은 신규성과 창작성등 의장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심사등록제도와 간단한 방식심사만 하는 무심사등록제도로 구분된다. 모든 출원은 출원을 하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통지서를 통지 받게 된다.

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출원된 의장은 출원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통보 받게 되며 새롭고 독창적인 의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고 의장등록증 및 의장등록원부를 발급 받는다. 심사 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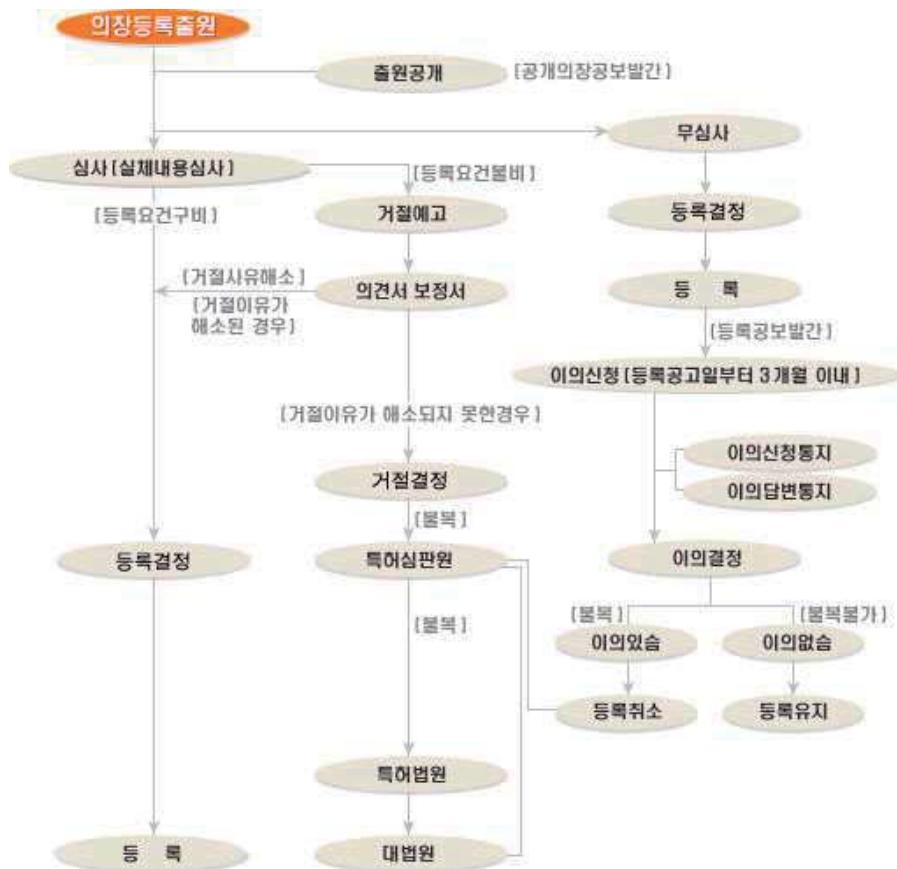
101) 특히, 상표와는 달리 권리주체로서 공민(개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 3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制度와 南韓의 產業財產權制度 比較

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의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그 의장등록 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무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일부 유행에 민감한 직물지나 벽지 등과 같은 물품에 한정하며, 간단한 방식심사와 도면상의 하자 및 공서양속 위배여부만을 심사하고 등록한 뒤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실체적 등록요건을 심사한다.

〈남한의 의장등록출원 절차〉



다음에 남북한의 의장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비교한다.

〈남북한 의장법 주요사항 비교〉

항 목	남 한	북 한
관련 법령	의장법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의장의 개념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2-1) :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 공업도안이란 제품의 특별한 형태와 장식, 색조화 등으로 제품의 외형을 새롭게 묘사한 것이다. (§30):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등록 요건	§5①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5② :창작성	〈신규성〉 : 약간한 변화 혹은 명백하지 않은 변화는 새 공업도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30 후단). 〈공업성, 창작성〉: 공업도안신청문전에 <u>공업도안의 유용성</u> 에 대한 평정서와 <u>창작가의 창조성</u> 에 대한 평정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2)
출원 기관	특허청장	상표 및 공업도안처
부등록사유	법§64 1.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규정 §34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것 2.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3. 출판물을 통하여 알려진 것 4. 먼저 전람회에 공업도안이 나가 있을 때 그와 류사한 공업도안이 신청으로 제기되는 것
침해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82①)	·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20) · 등록취소후 사용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재재(§28)
존속 기간	등록일로부터 15년(§40①)	5년(§36)

제 4 장 中國의 專利(特許)制度 概觀

중국의 전리법(專利法: 特許法)은 1984년 3월 1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오다가 1992년 9월 4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제1차 개정되었으며,¹⁰²⁾ 2000년 8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제2차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⁰³⁾

다음에 중국의 전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의 개략적인 전리제도와 전리법 개정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中國의 專利(特許)制度의 概念과 分類

I. 專利(特許)의 意味

중국의 전리제도의 이해는 전리(專利)’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전리제도에 있어서 ‘전리(專利), 전리권(專利權), 전리법(專利法)’을 일반적으로 특허(特許), 특허권(特許權), 특허법(特許法)’에 대응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¹⁰⁴⁾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련 법체계에서 오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102) 중국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연혁을 보면, 1950년 「保障發明權與專利權暫行條例」, 1963년 「發明獎勵條例」, 1982년 「專利法」(1984년 공포, 1985 시행, 1992년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특허 및 상표제도에 관한 연혁은 西原春夫, 「中國知的所有權法の理論と實際」(東京: 成文堂, 1998), 6~8頁.

103) 박희주, “중국의 개정 전리법 고찰”, 「지식재산 21」, 통권 제66호(특허청, 2001), 23면.

104)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知識產權이라고 하고, 이를 工業產權과 板權(저작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工業產權은 專利權과 商標權으로 나누고, 專利權은 發明專利(特許)와 信用新型전리(실용신안), 外觀設計專利(의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강경찬, “特色 있는 中國 產業財產權制度에 대한 考察”, 「지식재산 21」, 통권 제52호(특허청, 1999).

의 경우 특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각각의 독립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발명·실용신형·외관설계¹⁰⁵⁾를 발명창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을 전리법이라는 단일 법체제에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리법에 있어서 전리 또는 전리권의 용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발명, 실용신형, 외관설계에 수여되는 전리권의 통칭’을 나타내는 의미이나, 발명창조의 각 형태와 결합하여 쓰일 때에는 특정전리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II. 專利權 分類

중국의 지식산권(知識產權)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중국의 지식산권은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분류하며, 이 중 전리권은 발명창조의 형태에 따라 발명전리권, 실용신형전리권, 외관설계전리권으로 나눈다. 이를 우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국 양국의 지적재산권 분류와 법체계 비교〉

한 국		중 국	
지적재산권	관련법	지적산권	관련법
◇ 특허권	특허법	◇ 전리권	
◇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 발명전리권	전리법
◇ 의장권	의장법	· 실용신형전리권	
◇ 상표권	상표법	· 외관설계전리권	
◇ 저작권	저작권법	◇ 저작권	저작권법

III. 中國의 特許管理機關(國家知識產權局)

중국의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의 원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전리국(‘중국전리국’이라고 약칭함)이다. 1980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

105) 이는 각각 우리 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되었으며, 1998년 국무원기구개혁에 따라 중국전리국은 국가지식산권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국무원 직속기구로 되었으며, 중국의 전리업무와 해외지식산권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 출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남, 창사, 남경, 청도, 상해 등에 9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 보통미생물보관센터와 무한대학 중국전형 배양물보관센터를 미생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IV. 專利代理機構

전리대리기구는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위탁 권한 내에서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기구를 말하며, 업무영역에 따라 ① 해외전리사무 전리대리기구, ② 국내전리사무 전리대리기구, ③ 국내전리사무 변호사사무소로 구별하며, 해외전리사무 전리대리기구는 국가지식산권국의 허가를 받아 국내전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리대리기구의 주요업무로는 ① 전리사무의 자문제공, ② 전리출원 문건 대리 작성과 전리출원, 실질심사 및 복심, ③ 이의 신청, 전리권 무효 선고, ④ 전리권 양도 및 전리허가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전리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전리대리인 자격을 보유한 전직(專職)인원과 국가지식산권국이 규정한 일정비율의 겸직(兼職)인원을 보유해야 하며, 변호사가 전리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전리대리인 자격을 보유한 전직(專職)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리대리인은 ‘전리대리인자격증서’와 ‘전리대리인공작증’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지식산권국에 신고된 자를 가리키는데, ‘전리대리인자격증서’는 전리대리인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가지식산권국이 발급하며, ‘전리대리인공작증’은 ‘전리대리인자격증서’를 보유한 자가 전리대리기구에서 1년간의 실습을 수료하면 전리대리기구가 발급한다.¹⁰⁶⁾

106) 이에 관해서는 박희주, 앞의 논문, 26~27면.

제 2 절 中國의 改正 專利法 分析

I. 專利法의 改正 背景 및 意義

중국에서 전리법의 제2차 개정은 중국의 전리사업 발전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과학 기술 입국전략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정부가 전리 사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 준 것이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전리법 개정의 배경을 국내외의 두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對外的 背景

먼저 대외적 환경변화에 의한 변화요인의 반영이란 배경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전세계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국제경제생활과 경제교류에 있어서 전리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래, 국제무역에서 전리 및 기타 라이센스 무역 등에 의한 무형무역(無形貿易)의 성장속도가 유형무역(有形貿易)을 추월하고 있어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는 전리를 포함한 지식산권이 경제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지식산권을 시장경쟁과 경제경쟁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들은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식산권의 협상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TRIPS협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TRIPS협정은 오늘날 지식산권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산권 협정이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은 분쟁해결기구를 지식산권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 영향력이 과거의 모든 지식산권 관련 국제조약을 추월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개혁개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 對內的 背景

다음 중국의 국내상황에 입각한 배경이다. 1992년 제1차 전리법 개정이래 현재까지 국내형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개방과 개혁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음에 중국의 대내적 환경변화에 따른 배경을 살펴본다.

첫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다. 1992년 이전에는 중국이 과연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개혁목표로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전리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술창조의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는 “기술창조의 강화와 하이테크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의 실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제13조는 전문적으로 지식산권 문제를 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산권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리법의 제2차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전리법 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아래와 같은 목적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중국은 작년 중국공산당 제15회 중앙위원회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에 관하여 약간의 중대한 문제의 결정’을 수립하여 국유기업 개혁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를 시도하였다. 이 ‘결정’은 현대기업제도 수립, 지식산권제도 실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정치와 기업의 분리, 건전한 정책결정, 집행감독체계의 정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을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법인주체와 시장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전리제도가 과학기술의 진보에 더욱 이바지하고, 경제와 과학기술 상호간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입법 목적에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내세워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특히 개정 전리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에 있어서 단위의 물질과 기술조건을 이용하는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비직무

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셋째,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일보하게 정비하여 전리보호의 역량을 배가하였다. 이것은 이번 중국 전리법 개정의 중요사항 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에서 부실한 전리보호의 문제를 겨냥하여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의 양대 경로를 강화하였다. 사법측면에 있어서 개정된 전리법 제61조는 전리권을 받기 이전에 타인이 전리에 대하여 실시를 준비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 측면에서는 전리관리기관이 권리침해분쟁 또는 기타분쟁을 처리하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전리의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하였다. 전리 심사비준 절차의 간소화 및 정비는 전리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전리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의 보호하는데 유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TRIPS 규정에 더욱 근접하도록 정비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제1차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TRIPS의 요구에 도달하였으나 그 내용은 아직 미흡하였다.

여섯째, 국무원과 성급지방 전리기구 상호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전리법 개정은 전리대리기구, 전리관리기관 및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책임과 조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¹⁰⁷⁾

II. 中國 專利法의 主要內容

중국의 전리법 개정의 내용은 36조에 달하는데, 4개조가 삭제되고 4개조가 신설되었다.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본다.

1. 總則

(1) 立法目的의 補完

개정 전리법은 제1조에서 규정한 입법목적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이

107) 위의 논문, 27~29면.

를 보면, 기존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 이란 대목을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으로 개정하였다. 이것은 전리획득을 위주로 하는 기술창조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규모의 자주적인 지식산권을 형성함으로써 하이테크 산업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

(2)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의 專利業務 職能 明示

중국은 전리제도를 실시한 이래 지방전리관리업무체계의 정립과 발전을 중시하여 왔으며 전리관리업무의 기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왔다. 지방전리관리업무부문의 직능의 발휘를 촉진하고 전리의 행정관리 및 행정집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3조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행정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전리관리업무를 책임진다”라고 그 직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3) 職務發明 契約優先制 導入

전리법은 발명창조에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보상하며 발명창조를 장려한다. 1984년의 전리법은 직무발명창조의 범위에 대해 두 가지의 표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나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본 단위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다. 본 단위의 물질조건이라 함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재료 또는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중국에서 전리법이 15년간 시행되면서 이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사업의 관리체제 개혁, 특히 과제제(課題制) 실시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제도보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6조에서 계약우선원칙을 도입하였으며, 과학기술인력과 단위가 계약을 통해 단위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그 귀속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단위의 물질조건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발명자가 단위에게 사전의 약정에 따라 자금 또는 사용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으로의 개정에 의해 중국은 과학연구인력의 전리출원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하고, 단위에 유휴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설비 등 물질조건의 활용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키는 계기와 제도를 보완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全民所有制 單位의 專利權 保有規定 削除

개정 전리법에서는 단위의 성격에 따라 전리권의 ‘보유(hold)’와 ‘소유(possess)’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하였는데, 개정 전에는 전리권을 보유한 전민소유제단위는 전리발명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이 없어서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주관기관의 비준 등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개정 전리법에서는 국유사업단위를 시장경쟁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리출원 및 전리획득의 권리와 의무 방면에 있어서 비국유사업단위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전리법에서는 합작완성의 발명(전리법 제8조), 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양도(제10조) 및 계획허가(제14조)의 조문 등이 개정되었다.

(5) 職務發明 成果報酬制 採擇

1984년 전리법은 제16조에서 전리권이 수여되고 실시된 후에 단위는 직무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리법은 발명창조전리가 실시된 후에 단위는 그 응용범위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6조). 이렇듯 ‘장려금’의 지급을 ‘보수’의 지급으로 바꾼 것은 과학기술인력의 발명창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리가 수여된 이후에도 전리가 사장되지 않고 적극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경제적 환경과 제도의 현실적 적용의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6) 許諾販賣 追加

TRIPS 협정에 근거하여 전리는 제품전리와 방법전리로 나누고 있다. 먼저 제품전리의 경우, 전리권자는 타인이 해당제품을 제조·사용·허락판

매(offering for sale) · 판매 ·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다음 방법전리의 경우, 전리권자는 타인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할 권한을 보유하며 또한 그 방법으로 직접 제조하는 제품을 제조 · 허락판매 · 판매 · 사용 ·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제11조).

중국의 전리법상 TRIPS협정과의 차이점은 허락판매의 규정이 없는 것 이 유일한 것이었다. 허락판매는 전리권자가 타인이 판매 전에 판매추진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허락판매에 의해 침해행위를 초기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전리보호를 강화하고 TRIPS협 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전리법을 개정하면서 허락판매를 추가한 것이다.

(7) 專利局諸出願(PCT)의 法的 根據 明示

중국은 1994년 1월 1일 정식으로 PCT조약의 체약국이 되었으며, 중국 전리국은 정식으로 이 조약의 수리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이 되었다. 출원인이 PCT 경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리를 출원하며 전 리행정주관부문이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20조에서 유관문제에 대하여 원칙규정을 마련하였다.

2. 專利實施의 強制許可

(1) 專利權 紛爭處理에서의 行政處分 擴大

첫째, 개정 전리법은 제57조에서 지방전리관리업무부문이 전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리권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소도 하지 않고 권리침해행위를 중지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리관리업무부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경로는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처리가 신속하며 또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권리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각 권리침해를 중지할 것

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전리권자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효력이 있는 보호방법으로써 인정받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번 개정 전리법은 전리관리업무부문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뿐 직접 처리를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둘째, 단체권리침해 및 반복권리침해의 현상이 그치지 않고 전리분쟁의 복잡성이 증가하며 처리 난이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경로를 설치하여 사법경로에 대한 보충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57조 및 제58조에서 전리관리업무부문의 시장질서유지 직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제58조는 전리관리업무부문이 모방전리를 조사하고 개정 명령 및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전 전리법에서는 타인의 전리를 모방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고의로 위법행위를 하고 법제도를 문란케 했을 지라도 단지 사법수단에 의해 전리침해행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2) 公衆利益의 保護와 專利權者의 權利濫用 防止 強化

전리법은 실용신형전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의 합법적인 권리의 보호하고 실용신형전리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57조에서 실형신형에 대해 전리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專利權의 保護

(1) 權利侵害 賠償額 計算 規定 追加

전리침해의 손해배상은 전리권침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민사책임 중의 하나인데, 이는 공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며 권리권자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받은 실제손실이 합리적으로 배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60조에서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에 의해 받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되며,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리허가사용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 提訴 前 臨時措置의 補完

TRIPS협정은 제41조에서 법집행 절차에 있어서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있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권리침해행위의 발생을 제지하거나 권리침해상품이 상거래 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고발된 권리침해의 관련증거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전리제도에 있어서 법집행 절차에는 제소 전 유관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는 원래 없었다. 그러나 TRIPS협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제61조에서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 한다는 증거증명이 있으며,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인 권리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소전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3) 不法製品의 合法使用 制限

기존의 전리법은 제62조에서 선의의 제3자가 전리침해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권리침해의 예외로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고려가 합리적인 면도 있으나 권리침해자에게 불법제품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관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개정 전리법에서는 이에 대해 선의의 제3자가 권리침해제품을 사용, 허락판매, 판매한 합법적인 출처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제63조 1호). 그래서 본 규정은 어느 정도 권리침해자가 본 조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그 권리침해제품을 판매하는 맹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

며, 누구나 어떤 상품이 권리침해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영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전리권의 보호역량을 강화하였다.

(3) 撤銷 制度의 廢止

중국은 1992년의 전리법 개정 당시에 권리수여 이전의 이의제(異議制)를 취소하고, 권리수여 이후의 철소(撤銷)¹⁰⁸⁾ 절차로 바꾸었다. 원래는 이 절차가 공중이 전리국에 대하여 전리권 수여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실수를 지적하고, 전리행정주관부문이 행정절차를 통해 적시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절차가 무효 절차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 절차의 번잡을 초래하였고, 철소 절차가 악의로 이용되어 권리자가 무효 절차를 이용해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실제사례가 발생함으로서 절차의 간소화와 소송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소 절차를 삭제하였다.

(4) 實用新型 및 外觀設計의 最終審 管轄(人民法院)

TRIPS 협정 제32조는 전리를 철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4년 전리법은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 출원의 권리확정과 무효선언에 대하여 복심 위원회(覆審委員會)가 최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TRIPS 정신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 출원의 권리확정과 무효선언에 대한 최종 심을 인민법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7조).

4. 中國 特許制의 國際的 基準의 受容

(1) 專利權 讓渡 및 外國專利出願 節次 簡素化

108) 구 전리법은 제41조에서 “전리국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누구든지 그 전리권의 수여가 이법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리국에 그 전리권을 철소(撤銷)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리법은 첫째, 전리출원권의 양도 또는 전리권의 계약은 국가지식산권국에 등기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제10조), 공고가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둘째는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에 전리출원하는 경우에 국무원 유관주관부문의 동의(제20조)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審查批准 節次 等

심사비준과 권리유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외관설계의 전리성 조건(전리법 제23조), 외국검색 및 심사결과자료의 제출(제36조), 전리권의 효력발생시기(제39조 및 제40조), 무효절차의 제3자 참가소송(제46조) 및 소송시효(제62조) 등을 개정 내지 조정하였다.

(3) TRIP協定 遵守 強化

중국은 1992년 전리법 제1차 개정을 통해 주요방면에 있어서 TRIPS 협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지식산권, 특히 전리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발명의 추진과 보급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전리법은 TRIPS협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전리권자가 타인이 그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허락판매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권한을 보유토록 규정하였다(제11조).

둘째, 실용신형과 외관설계에 대한 복심 및 무효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 심을 수행토록 규정하였다(제47조, 제55조).

셋째,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리권자가 권리침해소송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61조).

넷째, 전리강제허가의 조건을 정비하였다. 이를 보면, 강제허가에 대해서는 1992년의 개정을 통하여 전리법의 유관규정이 기본적으로 TRIPS 협정과 일치되었다. 중국의 전리제도에는 합리조건강제허가(제48조), 공공

이익강제허가(제49조) 및 의존전리강제허가(제50조)가 있다. 여기서 의존전리강제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전리법은 “후발명이 선발명에 비하여 진보적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TRIPS협정에서 “후발명이 선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중요한 기술진보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개정 전리법은 TRIPS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제50조).¹⁰⁹⁾

제 3 절 中國과 北韓의 特許制度 比較

I . 中國과 北韓의 經濟開放法制의 比較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법체제 및 구조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법제에 입각하고 있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구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법제에 큰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변혁을 계기로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성공으로 수행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개혁모델은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시도된 경제개혁과 개방을 위한 법제정비의 틀과 내용은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문적이나마 경제부문에서의 개방정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중국의 경제개방의 성과에 고무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수호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개방법제의 원리와 방식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그것을 모방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109) 그밖에 강제허가와 관련된 제한조건들 예를 들면, 강제허가의 실시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 범위와 시간을 정해야 하며, 강제허가 이유가 없어져 재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허가를 종료해야 하는 것 등의 규정은 1992년의 개정에서는 전리법 실시세칙에 들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이를 내용이 전리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예컨대 북한은 1992년과 1998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내용 중 경제개방을 위한 헌법적 근거규정은 바로 중국헌법상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법제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사회주의 하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면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개혁과 발전모형은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북한헌법상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외국과의 합영·합작장려 조항의 신설(제16조)은 중국의 1982년 헌법상 외국기업·기타 경제조직·개인의 중국투자 및 경제합작추진의 협약규정(제18조제1항)과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합법적 권리보장규정(동조 제2항)과 유사하다. 아울러 북한이 1984년 제정한 합영법은 중국의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점은 북한의 경제개방법제가 중국의 경제개방법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이후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관련법 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중국의 관련법제가 참고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실례로 북한의 경제특구(경제무역지대)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은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더욱이 중국의 1999년 헌법개정의 내용에 비추어 중국헌법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1998년 재차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북한법 제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나타내주고 있다.¹¹⁰⁾

그러나 북한의 경제법제는 현재적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개혁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중국의 경제개방관련법제의 내용과 범위는 북한에서도 경제개방을 위한 초기적 단계에서 상당부분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체제에 가입한 시점에서 중국의 법제와 북한의 법제,

110) 북한의 경제개방관련법제의 중국법제로부터의 영향에 관해서는 장명봉·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정비동향」(한국경제연구원, 2001), 40~41면, 48~51면.

경제관련법제를 중심으로 볼 때에도 양자간의 차이는 현격해 보인다.

이는 법제의 형식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법체제와 법적 정합성의 체계적 한계뿐만 아니라 법제의 원리 및 내용 면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경제관련법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제도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아직 중국과 같은 경제원리와 운영체제에서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현행 경제관련법제와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법제의 관계, 특히 경제관련법제의 관계에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제라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경제개방의 초기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법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경제관련법제와 북한의 경제관련법제는 그 원리와 범위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사회주의경제원리와 제도의 자본주의화 내지 세계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이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그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업소유권 내지 산업재산권에 관한 중국법제와 북한법제는 비록 북한이 최근 「발명법」과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고 하지만, 2001년 새로운 전리법을 통한 특허제도를 개선한 중국법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II. 中國과 北韓의 特許法制 比較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의 북한의 경제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영향을 지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공업소유권 내지 산업재산권관련법제를 두고 볼 때에도 양자의 내용은 많은 면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법제는 특히 경제관련법제는 오히려 사회주의경제원리와 제도에 입각하기 보다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와 이를 근간으로 한 세계무역체제에 근

거하여 정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양자의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제를 비교할 때, 기본적인 사안에서의 접근자세가 틀리다는 한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특허제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양자를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첫째, 용어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중국의 지식산권(知識產權)이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 중국의 지식산권은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분류하며, 이 중 전리권은 발명창조의 형태에 따라 발명전리권, 실용신형전리권, 외관설계전리권으로 나뉘어진다. 이를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은 특허제도에 관한 법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특허권에 관하여 전리법에 발명·실용신안·외관설계(의장) 등에 관하여 단일법체계 하에 있는데, 북한은 발명법,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등 각기의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류와 법체계 비교〉

북 한		중 국	
지적재산권 (공업소유권)	관련법	지적산권	관련법
· 특허권 · 발명권	· 발명법	◇ 전리권	
· 창의고안권 (실용신안권)	·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 발명전리권 · 실용신형전리권 · 외관설계전리권	· 전리법
· 상표권	·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 상표권	상표법
· 공업도안권 (의장권)			
· 저작권	저작권법	◇ 저작권	저작권법

둘째,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의 특허제도의 차이는 사회주의제도의 원리와 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의해 전

반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을 보였고 지적 재산권분야에서도 시장원리와 자본주의제도에 기초한 규범에 따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제도의 고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외경제개방이라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과 북한은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의 방법과 운영상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자의 특허제도에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차이는 소유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사적 소유제의 인정을 통한 자본주의화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에 비해 북한은 사회주의소유제의 원리에 입각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기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2001년 개정 전리법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보다 다가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하의 산업재산권의 편제를 수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의 특허제도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변화로서 특허제와 관련해서는 소유제원칙의 변화에 따른 개선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적 소유제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던 이른바 ‘국가계획허락제’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중국의 특허제와 관련하여 국가계획허락제는 구소련의 발명자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에 기초한 것이다.¹¹¹⁾ 그러나 이 제도는 개정 전리법을 통해 보다 개인으로서의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허락판매 등의 사안으로 개정되었다(제11조). 이에 비해 북한은 오히려 발명권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제도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특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특허제도를 개선하면서 국제기준과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적극 견지하고 있다. 2001년 개정 전리법을 보면, TRIPS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 같다. 중국의 적극적인 법제개선은 중국의 경제제도의 변화원칙과 방향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현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실증할 수 있는 사례를 확

111) 西原春夫 監修, 앞의 책, 73~74頁.

제 4 장 中國의 專利(特許)制度 概觀

인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이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의 정도와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제도상으로 볼 때, 중국은 특허보호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15년으로 하여 단기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20년의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15년으로 정하여 비교적 단기라고 할 수 있다.

제 5 장 南北韓의 産業財產權 保護 및 交流協力의 制度化方案

제 1 절 南北韓의 産業財產權分野 交流方案

I. 南北韓의 産業財產權分野 交流協力의 必要性과 現況

1. 南北韓의 産業財產權分野 交流協力의 背景

남북한의 산업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은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지식과 정보가 부의 핵심 창출원으로 역할하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남북간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간 산업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호 보호와 보장책을 마련하고, 남북경협이 보다 안정된 기틀 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사이의 지식재산보호인프라의 상호확충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은 남한 기업의 북한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남북경협추진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며, 남북간 재화 및 서비스의 교류와 교역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로부터의 우리상표를 모방 및 위조한 상품의 북한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상호 특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기술이전 및 남북공동의 기술개발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경협이 확대될수록 남한의 북한 내 산업재산권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와 잠재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출원료·등록료 등 상당한 북한의 관련수수료 수입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남북간 산업재산권 상호보호는 한민족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기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분야의 보호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2. 南北韓 사이의 產業財產權 交流協力의 現況

1991년 2월 채택된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채택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는 제12조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남북한은 산업재산권 상호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이미 합의를 해놓고 있다. 이러한 합의의 기반을 토대로 하여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다시 활성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사업으로 이의 후속조치로 남북의 기본합의서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조항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경협 4대합의서에 비추어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는 일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모두 ‘파리협약’ 가맹국이므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조약에 따라 상대측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남북한이 합의하면, 남북한은 각각 별도의 국내법의 정비가 없이도 산업재산권 상호출원 및 등록은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분단 이후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특허나 상표를 등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남북관계가 그러하듯 산업재산권 분야가 비정치적인 분야이지만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인정문제등 정치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3국의 제3국적의 명의를 가지고 북한에 상표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찾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생각건대 남북한의 산업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의 정책과 부합하며 이념적 요소가 적은 분야라는 점에서 남북한이 상호 협력의 이점과 상호신뢰의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이 모두 WIPO, 파리협약, 그리고 특허협약(PCT) 등의 주요 산업재산권 관련조약의 가입국이므로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 상호출원 및 등록가능성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치적 사안에 기인하는 이유로 북한이 남한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출원서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남한의 기업은 중국·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제3국인 명의로 상표출원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 5월 현재 20여건의 상표출원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¹¹²⁾

북한은 외국기업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출원의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남한 기업에는 1995년을 전후해 상표권에 한해서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는 기술적인 표준과 국가기술의 보호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남한 기업의 북한내 출원등록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상표의 경우는 북한체제에 영향이 적은 속성에 의해 북한에 대한 남한기업의 출원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³⁾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하여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II. 南北韓의 相互 產業財產權 保護制度(事例分析)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제도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남북한의 상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례는 그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안 마련에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에 대한 자료와 사례

112) 「서울경제신문」, 2000년 8월 6일.

113) 장상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북한뉴스레터」, 2000년 8월호(KOTRA, 2000);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tc_26.php3.

는 많지 않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류협력의 사례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남북한의 상호 산업재산권 보호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초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南韓에서의 北韓 工業所有權의 保護

북한의 기관·기업소가 남한에서 직접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남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3자인 중개인을 통하여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진 북한의 사회단체 등과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표를 등록한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 남한에서 법원은 남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보면, 북한의 옥류관과 관련한 서비스표 등록사례를 들 수 있다. 즉, 남한의 주식회사 발원무역은 1998년 ‘평양옥류관’의 해외분점 개설 권한을 북한의 ‘조선대성무역총상사’로부터 수여받았다는 일본 파르무역과 ‘평양옥류관’의 남한내 분점개설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북한측의 담당창구가 ‘조선옥류무역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위 파르무역과 동일한 내용의 분점개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에 발원무역은 1999년 3월 16일부터 2002년 3월 11일까지로 정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1999년 5월 18일 등록을 마친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남한 법원은 서비스표의 권리인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¹¹⁴⁾

또한 남한의 동신수산식품 주식회사는 상표 “신덕”의 통상사용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1995년 중국단동시 수출입공사를 송화인으로 하고 조홍은행

114) 위 서비스표는 최재인이 1992년 3월 11일 등록번호 제15902호로 지정서비스업 제112류에 등록하였고 윤웅이 1998년 8월 8일 이전등록을 마친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 옥류물산은 1998. 9. 18. 북한의 조선옥류무역회사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하는 중국의 심양비행선광고 유한공사와 “평양옥류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양에서 제조한 냉면사리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1999. 4. 2. 주식회사 평양옥류관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상호의 등기일 1999. 4. 2.이며, 그 표장 중 도형부분은 2000. 5. 30. 제61606호로 등록된 서비스표이다. 이에 대하여 남한 법원은 “평양옥류관” 표장이 “옥류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특허법원 2000. 11. 17. 선고 2000허40008 판결).

명동지점을 사후 관리은행 겸 승인권자로 하여 북한 ‘조선농라도무역회사’가 제조한 신덕샘물 10,200병의 수입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1일 상표권자와 “신덕”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 4월 13일 본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한 사례가 있다.¹¹⁵⁾

이 사례에서 보듯이 직접 북한이 남한에 공업소유권의 인정신청 등의 사례는 아니며 북한과의 교역에서 남한의 기업에 의한 남한내의 국내법적인 문제발생에 의한 사례에 불과하다.

2. 北韓에서의 南韓 產業財產權의 保護

한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북한의 「발명 및 창의공안에 대한 규정」은 “이 규정에 지적된 조항내용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이나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정조항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협정들의 규제조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제47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은 “파리조약 제2조 1항에 따라 파리조약성원국의 기관, 기업소와 공민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가진다”(제5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조약들에 의해 남북한이 상호 조약

115) 이 상표는 국문자 “신덕”으로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세칙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 ‘광천수, 인공광천수, 생수, 약수’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1991. 1. 18. 등록출원하여 1992. 6. 9. 제240297호로 상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상표 “신덕”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제6조 제1항 제3호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등록상표 “신덕”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산지)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 “신덕샘물”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7조 제1항 제11호와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18 판결).

의 준수에 의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에 관련한 조약의 경우 남북 한간에 내국민대우원칙이 무차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남한의 산업 재산권이 북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¹⁶⁾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남북한이 당국자간 해결하여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 국제법상으로 남북은 모두 파리협약 가맹국이므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조약에 따라 상대측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동으로 합의만 한다면 남북한 각 측의 별도의 국내법의 정비가 없이도 산업재산권 상호출원 및 등록은 곧바로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상태에서 남한 기업이나 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 기업(주민)의 출원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3국의 제3국적 명의로 북한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경협과정에서 대북한 투자기업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남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임가공 또는 수출 등의 형태로 대북경협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북한 내에서 상표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보장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놓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¹¹⁷⁾

116) 이 부분에 대해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은 2000년 7월 남북한간의 특수한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남북한 모두의 공동 노력이 전제될 때 WIPO 차원의 협력이 가능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WTO/TRIPS 협정과는 달리 이 조약은 회원국들에 대한 기속력(binding power)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약의 이행 여부는 회원국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권규우, 앞의 논문, 40면.

117) 정문영, “북한 상표법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창간호(세창출판사, 1995), 128면.

제 2 절 南北韓間 産業財産權 交流協力 方案 檢討

I . 交流協力의 基本方向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호 교류방안은 다른 분야도 그러하듯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이 분야에서도 남북관계의 단계적 발전단계에 맞춰 단계별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상호출원 및 등록보장이라는 단기적인 과제, 남북제도 및 실무의 통일화를 모색해나가는 중장기적인 과제, 그리고 단일법제 및 단일특허청을 목표로 하는 통일과제 등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우선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토대로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상정(想定)한 데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안은 남한의 통일원칙이 남북의 상호 합의 하에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는 기조에 따르는 것이며, 화해협력의 기반을 확충하여 단일 체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구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교류협력의 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기조에 입각한 이른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구도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과정에 입각하여 최종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제도 및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바탕 위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동시에 남북한 특허당국간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기회를 최대한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남북한 사이에 추진될 산업재산권분야 당국자 회담시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행을 통해 실천이 되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및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당국간 협의채널을 구성키 위한 협의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II. 短期的 分野別 · 事案別 交流協力 方案

1. 相互出願 및 登錄保障 措置

산업재산권분야 교류협력의 세부합의서를 채택하는 경우, 이 합의서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양측이 합의한 다른 날로부터 상호출원 개시 및 상호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조약에 따른 남북한의 법령에 명시된 거절이유에 반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상호출원방법으로 3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강구해볼 수 있다.¹¹⁸⁾

첫째, 파리협약 및 남북한의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남북한의 특허행정기관에 출원 및 등록절차를 밟는 경우와 동일하게 남북한 주민이 남북한의 특허행정기관에 각각 상대방지역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남북한이 각기 법령 개정없이도 실천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이 출원서식을 통일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출원은 남북한의 특허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방식심사만 한 후 남북한의 특허행정기관에 송부하여 심사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리인 선임문제와 출원서식의 통일화 문제가 수반된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출원인들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남북한간 산업재산권창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특허행정기관 사이에 전산망을 연결하여 남북특허청을 통해 직접온라인을 통해 출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의 첫째 및 둘째의 어떤 방법과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특허당국간 전산망구축 및 대리인 선임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

2. 出願代理問題

출원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리인 선임문제다. 남북한의 주

118) 권규우, 앞의 논문, 46~47면.

민이나 기업이 상대지역에 출원할 때 상대측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 남북한의 관련 법령¹¹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지역도 남한의 주권 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 지역의 주민이나 기업들이 남한에서 본인이 직접 출원하거나 남한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서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북경협의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북한주민을 재외자가 아닌 재내자로 보아 내국인대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⁰⁾

3. 相對方 權利의 相互 保護問題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문제에 있어서 북한내 기술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는 점과 선행기술검색에 대해 세계주의를 취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남한기업의 기술에 대한 북한내 모방출원 및 등록으로 인한 폐해는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에는 일단 등록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까지 반영구적인 독점배타권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남한 상표의 북한내 제3자에 의한 모방출원 및 선점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상표에 관하여 예상되는 문제는 장래적으로 남한기업의 북한

119) 북한은 외국인이 특허, 상표등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16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제51조). 남한도 재외자가 국내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경유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특허법』 제5조, 『상표법』 제5조)

120) 현실적으로 북한의 특허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북한의 이른바 ‘변리사’ 제도의 실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제도상 외국인의 북한내 공업소유권 등록을 위한 대리업무를 위한 사무소 등이 알려져 있으나 북한의 변리사제도의 실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시 이러한 실태에 대한 상호 정보의 제공이 요청된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간 변리사업무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특허업무를 다루어왔던 중국의 변리사에 의해 일부 설정이 알려진 바 있다(1998년 2월 6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한·중 변리사 합동세미나’에서 중국의 程偉라는 변리사에 의해 그 일부 사실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마켓팅을 위해서 남북한간에 조속히 타결되어야 하는 현안으로 대두된다. 실제로 남북한 사이의 산업재산권보호 사례가 현재 상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의 경우 남북한의 등록권리에 대한 특허정보 및 자료를 교환을 확대해나간다면 선행기술누락이나 악의의 제3자에 의한 무단등록을 최대한 배제 또는 무효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남북한 주민 상호간 또는 경쟁업체간 악의에 의한 상표선점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산업재산권 상호출원이 인정되고 나면 상표브로커나 경쟁업체에 의한 상표 선점행위가 횡행하거나 양측에 등록된 권리상호간에 저촉 및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남북한간 상표공보 등 검색자료를 공유하여 심사과정에서 남북한의 선등록상표의 동일성 여부를 동시에 검색토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양측간 상표의 유사범위 판단기준을 통일화하도록 하며 상대지역에 등록된 권리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해 무단히 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심사 기준을 공동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북한 어느 한 지역에만 등록되어 있는 권리의 상대지역 확장적용문제는 장기적으로 통일법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남북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성숙된 이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획립된 남북한의 각기의 산업재산권체제의 상호존중과 속지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실효성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상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남북양측에 동일 및 유사상표가 공존하여 해당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남북간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또는 혼동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표권 발생의 선후에 관계없이 상대국 상표의 자국내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금지를 상호 방지하는 보장책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대측 권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실시 또는 원산지 표시를 조건으로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산업재산권분쟁

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를 남북한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치하여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III. 中長期的 交流協力 課題

중장기적 과제로는 남북한의 제도 및 실무 등 산업재산권보호와 관련되는 제반 인프라의 통일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중기과제를 포함하여 장기과제 및 통일과제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당국간 협의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분야는 기술 및 법률적 측면이 복합된 전문분야이며 관련제도의 통일화 작업이 일회적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과제의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정보 및 인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 및 구조의 조성과 구축이 시급하다. 각종 교류 및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허정보 및 자료교환을 통한 상대측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심사, 심판관 등의 인적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양측 정부기구간의 협의기반과 상호 신뢰구축이 요청된다.

그리고 남북한 산업재산권제도의 상호 호혜적인 활용과 충분한 가치확대를 위해서는 양측의 권리취득절차, 관련용어, 심사관행 등 제도전반에 걸친 통일화 추진과 과학기술 및 발명진흥사업의 공동수행, 선행기술공동조사, 연구 및 연수사업의 교류추진, WIPO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 구축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사업이 적극 발굴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¹²¹⁾

121)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재 WIPO의 지원 하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특허전산망 구축 및 현대화사업에 남한의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권규우, 앞의 논문, 48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상대지역 특허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양측의 특허전산망 호환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유용한 협력분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IV. 統一段階의 產業財產權 統合課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단계에서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통합과제는 남북한이 단일의 산업재산권법제의 제정 및 통합운영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통일과제의 실천 및 이행은 궁극적으로 여타 분야와의 연계 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분야만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등 산업재산권분야는 국제적 성격이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위에서 살펴본 제도적 통일화(harmonization) 과정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일 이전이라도 권리창설 및 절차수행비용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제도구축 및 절차구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단계적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1. 南北韓間 相互依存體制의 構築

그 하나는 이른바 상호의존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실무의 통일화(harmonization)가 충분하게 달성되고, 특히정보 D/B의 공유 및 심사인력의 활발한 교류가 전제될 때 실천가능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특허행정기관에서 심사되고 등록된 남한기업 또는 주민의 특허권을 남북한에서는 단순한 방식심사만을 거쳐 인증함으로써 남북한의 특허등록부에 유효한 특허권으로서 북한에 설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¹²²⁾

122) 이러한 방법은 중국과 홍콩, 대륙과 대만간의 사례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중국에 주권이 귀속된 이후 중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출원서류 및 등록원부등의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중국특허를 홍콩에서도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각각 특별 입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 특허 혹은 상표등록을 할 경우에 대만은 대등호혜원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대륙 당국이 대만지구주민의 특허 혹은 상표등록을 보방하는 만큼 대륙의 특허 혹은 상표 등록 역시 허용된다. 대륙지구 신청인이 특허신청, 상표등록 및 관련사항을 처리하려

이와 같은 상호의존체계(interdependent system) 운영은 통일과정에서 일방지역의 권리효력을 상대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인한 권리저촉이나 마찰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통일이후 급작스런 남북한의 통합특허청의 출범 및 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생각된다. 동시에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취득경비와 소요 인력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선행의장의 조사에서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의장분야도 제도 및 심사관행의 일치, 의장 D/B의 공동활용 등의 기초여건만 충족된다면 이와 같은 제도운영이 용이하리라 본다. 상표분야도 남북한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속지주의 원칙을 수정, 권리설정단계와 권리효력발생단계를 구분하여 접근한다면 이와 같은 남북 상호의존시스템의 채택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권리설정단계에서는 한반도내 ‘동일표장, 단일 상표 등록’ 주의를 원칙으로 남북 각 특허청이 상대지역에서 기 심사 및 등록된 상표를 사후 추인방식으로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상표권으로 등록 해주고 자기 영역 내에서 유효한 상표권으로서 행사 가능하도록 보장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남북한 주민들의 발명 및 상표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에서 단일 심사절차에 의한 단일권리의 설정이 가능하여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남북 산업재산권등록 인프라구축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2. 產業財產權의 單一 立法 및 特許機關의 統合

실제로 남북의 통일단계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 남북한간

면 주관기관에 등록된 특허대리인 혹은 상표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하며(「注冊要點」 제3조) 스스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대만동포는 대륙동포와 마찬가지로 그 발명·창작을 중국 특허국에 대하여 특허신청을 하여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만자연인은 중국특허국이 등기공고한 국내의 특허대리기구를 통하여 특허신청을 하여야 한다(「대만동포의 특허신청을 수리하는 데 관한 규정」). 대만주민은 상표등록에 있어서도 대륙주민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대륙 상표법이 대만주민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홍콩에 중국상표대리공사를 설립하여 대만동포의 상표등록신청을 대리하여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 동안 상표신청절차상 公證을 요구했던 것을 취소하여 이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법무부, 1995), 259~261, 393~395면 참조.

통일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된 이후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법을 제정하거나 일방의 법제를 상대지역으로 확장, 적용함으로써 단일법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단계의 단일법제 제정 및 특허청의 통합체제의 출범방안에 대해서는 독일통일과정¹²³⁾이 선례의 하나로 참고될 수 있다. 기실 독일의 경우 1989년 말부터 1990년 통일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동서독 특허청간에는 산업재산권통일에 대비한 교류협력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었다. 국가전체의 통일분위기가 무르익은 1989년 말부터 동독 자체적으로 서독의 산업재산권 관련법규에의 통일화조치가 행해지고 1990년 10월 통일조약이 완성되면서 통일화작업이 급속히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는 고려해야 할 사정과 상황은 다르다. 다만, 통일조약이 완성된 이후 상대지역의 기존권리에 대한 효력확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및 저촉권리의 해결방법은 향후 남북한 산업재산권 통일법 체제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산업재산권 효력확장법은 구서독에는 없는 경제특허(이른바 발명자증)의 특허로의 전환, 국제조약상의 우선권적용문제, 상표의 무효대상사유의 적용문제, 구동독 및 구서독 권리의 공존으로 인한 권리충돌에 관한 해결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당초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효력확장법이 발효한 이후 2000년까지 불과 5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는 정도에 그쳐 산업재산권 통일과정이 거의 성

123) 1990년 10월 3일 구동독이 서독연방에 편입함으로써 독일통일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서독은 통일조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구서독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구동독지역에도 확장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구동독의 특허청이 해체되고 뛰 헨소재 구서독 특허청이 통합특허청으로 기능하고 구동독 특허청의 업무는 베를린지 청에서 인수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예상하여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구동독권리와 구서독권리가 공존하여 상대지역에의 효력확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다. 동서독은 이미 1990년 2월부터 협상에 착수하여 1990년 5월 효력확장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은 1991년 2월 이른바 '효력확장법(초안)'을 입안하였으며, 1992년 4월 연방상원에서 최종 통과되고 1992년 5월 1일부터 동서독간 '권리의 상대지역 효력확장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독일의 산업재산권 통일과정이 완성될 수 있었다.

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은 각기 상대방의 권리의 상대지역 효력확장과정에서 권리공존으로 인한 권리분쟁이나 이종의 권리(즉, 발명증, 창의고안증,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효력전환방법 등에 관한 사안들이 이슈로 제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정과 관련하여 상호출원인정단계에서 교류협력단계를 거쳐 상호의존형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독일과는 달리 효력확장법의 적용과 산업재산권 통합체제의 운영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제 3 절 南北韓의 產業財產權 保護 및 交流協力의 制度化

I. 南北韓 產業財產權 保護에 관한 合意書의 採擇

남북한은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4개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의 채택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적인 보장책을 마련하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로서 앞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의 하나는 남북경협에 있어 자본 및 신용과 연관되어 있는 남한기업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보호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의 마련이라 할 수 있다.¹²⁴⁾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의 최초단계에서 특허와 상표제도의 보호에 대해 강조하였던 점은 남북경협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남북한간의 세부합의서를 채택을 상정하는 경우, 남북한간 상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의서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한기업의 특허와 상표를 북한에 출원·등록함으로써 북한의 특허 내지 상표 등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여야 한다.

124) 현재 남한은 북한에 대해 기업의 상표 및 특허에 관한 권리주장을 함에 있어 중국 또는 홍콩의 대리인을 통해 행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을 인정하여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통해 그 방도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은 모두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가맹국간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을 허용하는 데에 있어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도 상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II. 南北間 合意에 대한 法的 拘束力의 確保

앞서 언급한 남북경협의 법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간 세부합의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남북경협과 관련한 남북의 세부합의서의 체결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세부합의서의 채택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목에 그치고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간의 세부합의서의 채택과 함께 이에 대한 국내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현행 법체제 하에서의 조약의 국내법적 발효절차를 원용하거나,¹²⁵⁾ 이들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적인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전술한 남북경협의 법제도적 장치로서 남북간 세부합의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내용을 이룬다. 그 전제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의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¹²⁶⁾

125) 남북한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대하여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126) 이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조약이라는 전해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하여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진 남북한 당국 사이에서 민족내부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채택된 특수한 약정으로 이해하는 전해가 대립되고 있다.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발전방향”, 「남북교류협력법제 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4면.

현재 '남북합의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²⁷⁾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위반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 내지 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행할 수 없다. 남북합의서의 불이행과 이의 실천을 위해 남북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요청된다.

이들 세부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의 부정은 이들 합의서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 경협관련 세부합의서에 남북 당국간의 기본합의서 및 기타 세부합의서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로써 남북간 세부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간 세부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합의서의 발효에 대한 남북이 모두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⁸⁾ 이에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적 절차와 그 법적 효력에 대한 현실태는 좋은 경험이 된다.¹²⁹⁾ 남북경협의 세부합의서는 실제로 남북한간의 분쟁해결에 있어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합의서의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해결을 하고 그에 대한 판결 내지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127) 현재결 1997. 9. 16, 89현마240; 현재결 2000. 7. 20, 98현마63 등.

128)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 12~16: 평양)의 공동보도문(2000. 12. 16)을 통해 남북은 남북경협투자보장 4대합의서에 대하여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14426.htm>. 이에 따라 남한에서도 이 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발효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129)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와 관련한 국내입법적 절차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국내절차의 완료를 말하기는 미흡하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남북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더라고 이에 대해 단순한 신사협정으로 보아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남북간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되는 경우 단순한 신사협정을 넘어 준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 사이의 경협을 위한 세부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결과 반목에 입각한 남북관계에 관한 법적 성격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에 기초한 규범영역을 창설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권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다.¹³⁰⁾

이는 앞으로 남북한간에 여러 분야에서의 합의서의 채결을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남북은 중요 사안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 실천과 이행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합의사안 이외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문화(死文化)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간 합의서의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문건으로 작성되고 발효된다면, 그 당해 사안 이외의 문제에 의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면에서 이들 합의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인 해결방안으로 남북한간의 각종 합의서에 대하여 현행헌법상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I. 南北韓의 法制度的 協力關係 構築

남북관계의 법제도화와 법적 측면에서의 통일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법제는 상호 그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 전제로서 상호 법제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정확한 상호법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개선방안

130)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의 근거가 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과 권위의 제고, 남북교류협력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 등을 통해 이 합의서의 법적 이행보장의 장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동의 내지 결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이에 대한 통제라는 효과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제도의 모순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의 통일이 법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법제도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법률실무협의회’의 구성에 의해 상호법제 이해와 법적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남북 화해 부속합의서 제4조, 제26조). 이에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교류협력의 법적 기초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법률실무협의회’의 활동을 통한 역할에 기대를 걸 수 있으며,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¹³¹⁾

아쉽게도 정치적 협상과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아직 이 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의 효력인정과 관련하여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남북통합법제의 방향모색에 있어 ‘남북법률실무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여타 분야의 남북한간 세부합의서가 채택되고 있는 것과 연관하여 법제분야의 남북한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합의서의 채택을 추진할 수 있다.

131) 崔鍾庫, “南北韓法의 歷史的 形成과 課題”, 「법제연구」, 제19호(한국법제연구원, 2000), p.324.

제 6 장 結 論

실제로 남북한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북경협보장 4개합의서’의 채택은 남북한이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경협분야에서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여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는 기본적인 사안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남북의 경협보장의 일환으로 남북이 상호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산업재산권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전분야에 걸쳐 요구되는 사안인 것이다.

남북이 보다 관계를 증진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합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은 현실문제로 다가서는 통일정책 내지 통일문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동시에 통일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과거 남북한 간의 중요한 합의문건이 사문화되거나 유명무실해졌던 경험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퇴행시키는 순환을 되풀이하게 하였다. 강조하건 대 통일문제의 현실적 접근은 소중한 남북한간의 합의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은 통일문제의 법제도적 접근을 요청한다. 기실 통일을 이룬 동서독 및 남북예멘의 사례에서 두 분단국의 통합 내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구체적인 일은 모두 법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공업소유권 및 그 보호제도에 관하여 고찰한 것은 남북의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다루어진 것이다. 남북한의 통합에서 상호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 분야의 보호 및 교류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논구는 바로 남북의 통합기반으로서 제도적 토대를 형

성해 나가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의 공업소유권 내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의 출발을 의미하며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를 한 것이다.

다음에 북한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는 국제적인 추세에 상응한 제도의 도입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최근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의 창조적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무역의 강화는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경제개방, 대외무역의 강화는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상호 보충적 관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건설을 정보기술분야의 진흥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발명과 새 기술에 대한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¹³²⁾ 즉, 강성대국건설에 과학기술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는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에 입각한 발명권의 개념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私的所有)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특허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라고 강조하지만, 발명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에서 고양될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강조하는 발명의욕고취는 구호에 지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처한 경제난의 심화 현상이 사회주의계획경제원리의 비효율성과 후진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 후진성은 지식재산분야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강조는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고수를 강화하는 조치와 연관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의 강화

132) 북한은 '제6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내각주최로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를 개최하여 3천5백여종, 1만1천여점의 발명 및 새기술 성과를 출품하였다고 한다. 「2002 북한연감」, 앞의 책, 433면.

에 따른 자세의 견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북한은 지적소유권의 일부로서 공업소유권 제도를 두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상황의 부진을 반영하듯 남한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발전은 그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감을 준다. 용어에 있어서도 공업소유권을 사용함으로써 용어를 중심으로 보면, 남한의 1980년대 상황에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지적소유권 분야의 하나로서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2001년 「저작권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지적소유권 분야의 강화라는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북한의 공업소유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낙후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지적 재산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에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남북관계에서 보다 교류협력의 기반이 확충되고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남북한간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과 관련한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해나갈 것이다. 현재 북한의 인위적인 장벽에 의해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이에 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둘러싼 분쟁과 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는 시기에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도 새롭게 변화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은 단순히 어느 개인이나 기업체의 기술이나 상표권의 보호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에 국한되어 정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남북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물자·자본·기술적 사상·지적 창작물 등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물적 재산의 유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남북 사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발전적 교류협력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릇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산업재산권분야의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서 그 활성화의 가능성성이 크다. 산업재산권의 상호 보호방안의 구체

제 6 장 맷 음 말

적 제도화를 통하여 남북한의 과학기술의 개발촉진은 물론 남북한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무대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면, 민족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가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의 단계에서 그 한 분야로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남북한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기초자료로서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附 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986. 6. 28 발명위원회, 정무원 결정 제 45호)

우리나라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명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명을 장려하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발명과 창의고안성과들을 제때에 심의, 등록, 평가하고 도입 일반화함으로써 기술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기관, 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고 한다) 및 공민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발명 및 창의고안사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위원회(이래부터는 발명위원회라 한다)가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제 4 조 이 규정에서 발명이란 이미 알려진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말한다. 발명에는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계설비와 장치, 제품, 기술공정 및 생산방법과 같은

〈附 錄〉

과학기술적 제안들이 속한다.

제 5 조 이 규정에서 창의고안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범위에서 지금있는 기계설비, 장치, 기술공정, 생산방법의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성과를 말한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발견과 사회과학 및 순수자연과학리론
2. 산업미술 및 공업도안
3. 시설물, 건설물등의 설계
4. 계산도표, 표식, 부호, 시간표, 경기규정, 운행규정, 프로그램
5. 경제조직사업 및 기업관리방법
6. 사회도덕에 맞지 않는 제안

제 7 조 발명권과 특허권, 창의고안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발명권은 발명의 창조하는 것과 발명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제 9 조 발명자는 현행법규범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명권과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발명에 대한 리용권은 국가가 가진다.

제 10 조 특허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리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이다.

제 11 조 특허권은 발명위원회가 발명등록신청문건(이) 아래부터는 신청문건이라 한다)을 접수한 날로부터 15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에는 특허권소유자의 동의없이 그것을 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해당한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금을 물어야 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은 발명에는 특허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1. 화학적방법으로 얻어진 물질
2. 의약품과 식료품
3. 원자핵반응으로 생신 물질과 원자력을 리용한 설비
4. 동식물의 새품종과 육종방법

제 2 장 발명 및 창의고안의 심의등록

제14조 발명 및 창의고안 등록에 대한 신청은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 창의고안자(또는 공동창의고안자),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또는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제15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요구하는 신청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이 아래부터는 신청문건이라 한다)을 발명위원회에 내야 한다.

발명제안의 우선권날자는 발명위원회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 특허권이나 발명권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 신청자는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제17조 신청문건에는 발명등록신청서(이 아래부터는 신청서라 한다), 발명 개요, 발명에 대한 기술설명서, 발명주장범위 및 그림등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발명위원회는 신청문건을 받으면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신청문건접수 통지서를 보내며 발명등록신청공보에 발표한다.

제20조 특수부문의 발명에 대한 심의사업은 특수부문발명심의기관들에게 맡아한다.

제21조 발명권신청자는 발명품이나 견본품 또는 시편, 시료등을 신청문건과 함께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발명제안에 대한 심의결정은 발명위원회가 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5개월 안에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신청자는 발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안에 제기하여 해명받아야 한다.

제24조 발명위원회는 심의결정된 발명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국가발명등록부에 등록한다.

제25조 심의결정한 발명권이나 특허권의 효력은 발명위원회가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6조 발명위원회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공보에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필요에 따라 일부 발명은 공보에 내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공민들은 발명위원회가 발표한 공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3개월안에 제기하여 해명받아야 한다.

〈附 錄〉

제28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신청한 발명의 중요 과학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심의결정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다.

제29조 창의고안등록신청자는 창의공안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자기가 일하는 기관, 기업소나 그것을 받아들인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제30조 창의고안등록신청문건에는 창의고안등록신청서, 창의고안에 대한 설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창의고안등록신청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등록시키되 기술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창의고안은 기술평정을 하여 해당 도(시) 과학기술행정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발명 및 창의고안에 대한 평가

제32조 해당기관, 기업소는 발명을 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에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일군에 대하여서는 국가표창과 명예칭호 또는 국가수훈을 위한 추천문건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기관, 기업소는 발명과 창의고안을 많이 하여 국가에 큰 이익을 준 일군에 대하여서는 한 등급이상의 기술자격급수 또는 인정기술자격을 주기 위한 추천문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명권소유자에게는 그의 요구에 따라 해마다 10일간 새로운 발명을 위한 문현조사기간을 줄 수 있다.

제34조 발명권소유자에게는 발명증서와 발명메달 및 발명상금을 특허권 소유자에게는 특허증서를, 창의고안자에게는 창의고안증서와 창의고안상금을 준다.

제35조 발명권소유자에게는 해당 발명의 도입실적에 관계없이 발명건당 600원까지 발명특전상금으로 발명상금몫에서 먼저 준다.

제36조 발명상금몫은 발명제안을 받아들여 정상화한 다음 첫 2년동안 얻어진 리익금의 5-10% 범위에서 발명위원회가 정하며, 창의고안 상금몫은 그것을 받아들여 정상화한 다음 6개월 동안에 얻어진 리익금의 5-10%범위에서 해당기관, 기업소가 정한다.

제37조 발명 및 창의고안사업을 적극 도와준 협조자들에 대한 상금은 발명 및 창의고안상금의 40%범위에서 나누어주며 개인별 상금몫은 그들

의 업적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인 기관, 기업소가 정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는 발명 및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3년동안 매해 실지 얻어진 리익금의 5%를 발명 및 창의고안 기금으로 세운다. 발명 및 창의고안 기금의 2%를 발명위원회와 해당 웃기관들에서 조절하여 쓸 수 있다.

제39조 발명 및 창의고안 기금은 발명 및 창의고안을 장려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실습, 견학, 방식상학등에 드는 비용과 발명특전상금, 발명 및 창의고안 현상모집, 기술혁신전시회, 기술혁신경기에서 주는 상금으로 쓸 수 있다.

제 4 장 발명 및 창의고안의 장려와 도입

제40조 웃기관은 아래 기관, 기업소에 해마다 발명 및 창의고안 목표과제를 주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기관, 기업소는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경제적 효과가 높은 발명과 창의고안 목표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기관, 기업소들은 발명과 창의고안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전시회, 기술발표회, 경험교환회, 방식상학, 현상모집, 견학등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43조 발명 및 창의고안을 한 일군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 웃기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관, 기업소에서 기술적 방조를 요구할 때에는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44조 발명위원회는 발명 및 창의고안자료들을 해당 출판기관들에 주어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제재 및 기타

제46조 발명과 창의고안사업에서 허위자료를 제기하였거나 발명권이나 특

〈附 錄〉

허권소유자의 권리침해 및 발명에 대한 비밀을 루설한 기관, 기업소, 공민은 엄중성정도에 따라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제47조 이 규정에 지적된 조항내용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이나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정조항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협정들의 규제조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발명위원회는 이 규정 집행을 위한 시행세칙을 따로 만들어 실시한다.

제49조 이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12월 27일 정무원 결정 제 279호로 개정된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없앤다.

‘발명 · 기술혁신법’(‘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86. 10. 28. 제 정
1986. 11. 1. 발효¹⁾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규칙의 목적은 발명촉진 및 대중기술혁신운동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1986. 6. 28. 북한 발명 · 기술혁신법(이하 “법”이라 칭함)을 엄정하게 시행하는데 있다.

제 2 조 이 규칙은 북한의 기관, 기업, 사회협동체, 국민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외국의 기관, 기업, 사회협동단체(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함) 및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제 3 조 북한의 발명위원회(이하 “발명위원회”라 함)는 발명심사국, 도과학기술위원회 및 전문분야 발명심사기관을 통해 발명과 기술혁신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북한에서 발명자증이나 특허는 내용에 있어서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탁월한 기술적 ·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부여한다.

1. 이 규칙에서 “선행기술”이란 특정발명의 우선일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공개된 학 · 기술을 말한다.
 - ① 국내 또는 기타 국에서 등록된 발명, 신기술이나 기술혁신의 공개
 - ② 당해 우선일 6개월 이전에 발생한 간행물, 과학심포지움, 과학강연, 방송, TV와 영화상 영 및 기타 행사

1) 이 시행규칙은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용어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의 명칭도 ‘발명 · 기술혁신법’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변경하여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세칙의 조항과 내용은 입수된 상태 그대로 전재한다. 이 시행세칙의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附 錄〉

- ③ 당해 우선일보다 6개월 이전에 개최된 국내외 전시회나 국제박람회
 - ④ 상기 규정 외에 일반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기술
2. “내용이 신규한”이란 아직 공중에 알려지지 않고 다음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과학이나 기술을 말한다.
- ① 이 규칙 제4조 1항의 방법에 의해 공개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원리와 방법의 적용에 있어 독특한 과학이나 기술의 내용
 - ② 종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기존의 원리, 방법 또는 성분의 합리적인 배합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특수한 원리, 방법 또는 성분의 개시
 - ③ 공지물질의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및 이를 토대로 그 기술을 선출원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 적용하기 위한 특수방법
3. 특정발명의 과학적 및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내용에 진보성이 있는”이란 전제조건으로서의 특이성을 갖고 있고 현행 기술수준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기술적 내용보다 진보된 발명의 과학·기술적 내용을 말한다.
4. “탁월한 기술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이란 다음의 특성을 의미한다.
- ① 노동능률의 향상과 제품의 품질개량
 - ② 힘든 일을 쉬운 일로, 위험한 일을 안전한 일로 만드는, 또는 근로의 안정성 및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유사한 특성
 - ③ 원료, 연료, 반가공재료, 노동 및 기타 성분의 절약하는 것 또는 국가의 환경에 적합하게 원료 및 생산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효과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는 것
 - ④ 의료기구 및 의약품의 부작용을 극소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사용하는 것
5. 재현가능하고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발명
- 제 5 조 발명의 대상은 기계류와 장치, 기구, 물품, 기술공정, 생산방법 및

기타 과학 기술적 해결책이어야 한다.

1. 기계류 및 장치와 기기에는 새로운 기계, 장치, 부품, 기구, 용구, 도구와 용기 그리고 건축구조물, 운송수단, 통신수단 및 그 자체가 독창적인 구조적 기능을 갖는 기타 기술적 수단이 포함된다.
2. 물품이란 새로운 화합물, 혼합물, 용재, 각종원료, 반가공재료, 합금 및 가구, 신발, 장난감 같은 생필품 그리고 독창적인 조성과 특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타 물품
3.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은 새로운 특징적인 요소와 연속과정을 가지는 기술공정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과 분석의 방법도 이 범주안에 포함된다.

제 6 조 기술혁신의 대상에는 기계, 설비나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재설계나 강화 및 기술공정이나 생산방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함된다.

1. 현재 사용중인 것으로 기계, 장치, 도구 및 생산공장 메카니즘과 같은 건축구조물, 설비의 합리적인 재설계나 강화에 관한 제안
2. 현재 사용중인 생산공정이나 방법, 건축방법, 분석방법 및 기타 공정이나 방법의 개선에 관한 제안

제 7 조 이 규칙은 다음에 상술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발견, 사회과학이론 및 순수자연과학이론
 - ① 새로운 지하자원이나 물질의 발견
 - ② 자연법칙과 자연현상 및 수학공식의 발견
 - ③ 순수치료, 질병예방과 진단방법, 순수한 생물학적 배양방법, 식물·동물의 육성과 보호방법으로서 기술적 요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 ④ 기술적 내용이 없는 순수자연과학이론
 - ⑤ 교육의 원리, 체계 및 방법
 - ⑥ 문법, 정보, 분류, 기타 규율의 체계
2. 산업미술과 의장
 - ① 기계, 설비, 건축, 생필품 및 기타 물품의 디자인
 - ② 상품, 서비스표 및 기타 상응하는 기호

〈附 錄〉

3. 시설물, 건축물 및 기타 장치의 디자인

- ① 공장이나 기업의 건설계획과 건설 부지에 관한 총괄계획과 청사진
- ② 삼림지, 높지와 농토, 도시 및 거주지역, 유원지, 공원 등과 같은 토지개발에 관한 청사진과 계획의 제안

4. 계산도표, 표장, 기호, 시간표, 경기규칙, 교통규칙 및 컴퓨터 프로그램

- ① 여러 가지 계산도표, 계산자,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러한 프로그램 작성방법
- ② 각종 표장, 기호, 시간표 및 간판
- ③ 경기규칙, 교통 또는 운동규칙 등

5. 경제조직 및 회사경영의 방법

- ① 경제조직 및 회사경영체계
- ② 수입, 지출, 근로 및 원료에 대한 계획과 계산방법
- ③ 서류관리방법, 사업양식의 표준화, 기계와 장치의 운전 매뉴얼 작성 및 카다록 편집방법

6. 사회도덕에 반하는 제안

- ① 북한의 고귀한 관습, 사회중의 도덕성 및 생활양식에 반하는 제안
- ② 사회이익에 반하거나 해로운 제안

제 8 조 1의 기술적 제안에 대해 복수의 보호형태 즉, 발명자증, 특허 및 혁신자증을 중복적으로 부여받을 수 없다.

제 9 조 기관 및 기업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발명자증으로 보호 받는 발명을 도입하여 대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기관,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한 발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명위원회에 그 취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어떠한 기관, 기업이나 개인도 발명자증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을 임의로 팔 수 없다.

제11조 특허권자는 그의 권리 전부 또는 일정기간 독점실시권을 타 기관,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보상의 지불조건과 방법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한다.

계약서는 발명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2조 특허된 발명이 국가에 매우 중요한 것일 경우 국가가 특허권을 양도받을 권리나 독점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국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13조 부여된 특허는 특허권자가 희망할 경우 발명자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일단 부여된 발명자증은 특허로 변경할 수 없다.

- ① 특허를 발명자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발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특허가 발명자증으로 변경될 경우 특허권자는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약간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특허가 발명자증으로 변경된 후 다음 첫해부터는 특허에 대한 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연차료를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4조 발명자증이나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이 외국의 항공기, 선박이나 육상운송수단의 부분적인 보수나 유지에 이용될 경우 발명자증이나 특허의 발명에 관한 권리는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발명에 관한 특허의 부여는 소정의 절차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① 출원인은 출원할 때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료가 출원보다 늦게 납부되는 경우 출원료가 발명위원회에 납부되거나 은행수령증이 위원회에 수리된 일자가 공식 출원일이 된다.

발명위원회의 출원수리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하기전에 출원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기타 절차에 대한 수수료와 지불방법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매년 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① 특허에 대한 년차료는 발명위원회에 출원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 ② 첫 번 및 두 번째 년차료는 발명위원회가 특허등록을 통지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후 3차년부터는 년차료는 특허갱신년의 개시 전 90일전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특허권자가 원할 경우 몇 해의 년차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도 있다.
- ③ 년차료는 소정의 기한경과 후 180일 이내에 원래금액의 50%에 해

〈附 錄〉

당하는 추가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 ④년차료가 소정기간 경과후 18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당해 특허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년차료의 액수 및 지불방법은 별도 조항에 따른다.

제17조 일단 납부된 취급수수료 및 년차료는 초과납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2 장 발명 · 기술혁신의 심사 및 등록

제18조 어떤 기관, 기업이나 개인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 임의로 발명자증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다음의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외국의 기관, 기업이나 국민은 제외)

1. 과학연구기관, 교육시설 및 기타 국가예산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조직

2. 기관이나 기업의 자금, 재료 및 장치를 사용해서 발명한 개인발명가

제20조 외국의 기관, 기업이나 개인의 출원할 권리는 자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북한국적의 출원인에게 출원할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출원인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제21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과학연구기관 및 교육시설은 그들의 연구 과제의 수행중에 획득한 과학연구결과가 보호대상이라고 간주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명자증을 출원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는 발명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한 자로서 다음의 자만이 된다.

1. 발명을 창안하여 그 실현에 의해 과학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자

2. 발명착상을 실현함으로서 과학기술적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한 자

3. 발명을 창안하고 그 실시방법을 제시하여 실현한 자

제23조 다음의 자는 발명에 관한 보조자이다.

1. 발명을 창안했거나 발명을 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자료를 제공한 자

2.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발명을 체계화하거나 개혁시 준비에 도움을 준
자

3. 발명의 파일롯트테스트나 실험도입에 기술적 또는 실질적 도움을 준
자 또는 자기 책임하에 이와 같은 일을 기획하고 지시한 자

제24조 기술혁신자(또는 공동기술혁신자)와 보조자의 구분결정 원칙은 상
기 규정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해 정한다.

제25조 발명자증이나 특허를 직접 출원하거나 특허협력조약(PCT)에 의
거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출원인은 평양특허상표대리부를 통해
모든 공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 특허나 발명자증 부여를 출원하는 자는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발
명등록출원서(이하 “출원서”라 칭함) 2부를 작성, 그가 소속되어 있거나
그 발명을 최초로 도입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출원서를 수리한 기관이나 기업의 기술심사위원회는 15일내에 출
원서류의 불비여부, 과학 · 기술적 내용,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와 발명
자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그 출원이 보호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술심사위원회는 평가서와 함
께 그 출원서 2부를 발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은 수리한 기관이나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한 내에 출원서
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해 출원인은 직접 발명위원회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발명자가 아닌 기관, 기업이나 개인이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발명에 관한 출원이 북한 영토 내에서의 계획, 대외경제협력이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약이나 계약의 수행으로 외국인과 공동으로 발명
에 관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발명을 했을 때에 근무하고 있던 기관이
나 기업을 통해 발명위원회에 출원을 해야 한다.

제30조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북한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하고 그 국제출원이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내단계에 들어간 경우
에는 출원료 납부를 증명하는 은행영수증, 제출된 국제출원서의 번역문
및 출원인이 희망하는 보호형태(특허 또는 발명자증)를, 명시한 서류를

〈附 錄〉

발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출원은 내용증명, 등기 및 일반 우편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의 우선일은 출원서가 발명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리된 날짜이다.

제33조 북한이 당사국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외국출원인은 법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출원서는 발명의 단일성 원칙에 따라 발명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되었을 때 어떤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상호 연계되었을 때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발명의 과학·기술적 요소는 분할할 수 없다.

제35조 발명위원회는 출원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발명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분할하여 각각 별도의 출원을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36조 발명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요약서(초록), 발명의 설명 및 청구 항과 같은 출원에 포함되는 요건들은 국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국문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소는 영어 또는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기타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그 경우 국문으로의 번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7조 모든 출원용지는 백색이어야 하며 용지의 크기는 19cm×26cm 이어야 하고 각 용지는 세워서 사용하여 한다.

외국출원인은 21cm×29.7cm 규격의 용지사용이 허용된다.

1. 모든 내용은 복제가 가능하고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으로 정자로 타자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2. 모든 용지는 손쉽게 분리 또는 결합할 수 있도록 왼쪽 끝을 철해야 한다.

제38조 출원구비서류는 다음 순서대로 철해야 한다.

평가서(외국인출원의 경우 제외), 출원서, 초록, 명세서, 청구항, (파일 롯트)실험보고서, 인용문헌목록, 위임장

제39조 출원서는 소정양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은 간단하고 정확하며 발명의 요지를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2. 1의 발명에 대해 복수의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출원서를 작성하고 자기가 찾아낸 청구의 과학적 · 기술적 해결책을 명시해야 한다.

제40조 초록에는 발명의 과학적 · 기술적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초록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발명에 의하여 달성한 기술적 해결의 목적과 핵심, 발명의 주된 용도 및 기술적 · 경제적 효과를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 명세서에는 당사자(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해야 한다.

1. 명세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해결되는 주요 문제를 공개해야 하고 발명의 목적, 국가경제상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발명의 실시 분야를 구체화해야 한다.
2. 명세서에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 현 동향을 적시하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부문과 그러한 문헌의 원천을 적시해야 한다.
3. 명세서에는 발명의 전반적인 기술적 원리, 구조적 기능, 성분과 조성 비율, 제조방법 및 그 발명에 의하여 달성한 해결의 기술적 요건, 방법 및 특징에 관하여 상세히 당해 발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① 기계와 기구 또는 장치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배치도, 스케치 회로 도 기타 유사한 도면에 관하여 기술적 특징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물에 관해서는 명세서에 제조방법, 기술적 요건 및 조성비율을 작업계통도, 실험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설명해야 한다.
 - ③ 명세서에는 발명의 실시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예 하나 이상을 필요할 경우에는 화학식에 의한 표현, 도면 및 기타 실증자료를 인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4. 명세서에는 국가경제상 발명의 실시전망과 그 잠재적 경제효과를 적시해야 한다.

〈附 錄〉

- ① 발명이 실험도입 또는 중간시험이나 실험실시험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기술적·경제적 발전사항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② 발명의 기술적·경제적 효과는 입증된 발견사항을 근거로 다음의 실제결과에 대한 년간추정치로 산정해야 한다.
 - 절대적 및 상대적 노동절약(인·일)
 - 절감될 수 있는 재료나 장비의 계산(단위, 크기, 양)
 - 년간 절감(이익)에 대한 계산
- ③ 목적이 수입품의 국산대체에 있거나 위험한 노동을 안전한 노동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경우의 발명은 그 기술적·경제적 중요성을 명시해야 한다.

제42조 청구항에는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을 그 발명의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특징에 관하여 항목별로 정의해야 한다.

제43조 출원서류는 실험결과보고서 및 평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실험보고서는 실험을 한 기관이나 기업이 확인한 실제 측정치를 제시하는 서류여야 한다.
2. 실험이 출원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타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험실 시험, 중간파일롯시험이나 응용시험의 결과에 관하여 당해 시험기관이나 기업이 발급한 평가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도면에는 개략도, 배치도, 절차도, 챕트, 그래프, 청사진 및 기타 통상적인 도면형식으로 작성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면은 검정색으로 채색하지 않고 동일한 굵기에 명확한 선과 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은 청구범위를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장소에 참고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3. 도면의 축척과 도면작성의 선명도는 직선거리를 1/3로 축소하더라도 세부사항이 분명히 식별되도록 사진복제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제45조 출원서류에는 인용문헌을 기재하고 페이지, 발행년도 및 출판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출원서류를 접수한 발명위원회는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출원인에서 접수통지를 해야 하며 발명등록출원 공보에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출원 발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 공보의 공개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 또는 일반인은 2개월 이내에 우송하거나 직접 발명심사국에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발명자증출원인은 발명심사국에 발명에 따른 시작품, 견본, 표본,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발명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면 시작품, 견본이나 표본 및 출원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49조 출원발명의 과학적 · 기술적 내용에 관한 심사는 발명심사국이 행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명위원회에서 내린다.

1. 출원이 이 규칙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명심사국은 보정요청과 함께 출원인에게 환송한다.

이 경우에 출원일은 보정된 출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2. 2 또는 그 이상의 출원이 동일한 날짜에 제출되고 그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공동발명자로 간주하고 동일한 출원일, 동일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발명위원회는 이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리고 상호 공동발명가가 될 것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발명위원회의 요청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명심사국은 심사증의 출원이 적절히 작성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자료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결점의 보정을 지시해야 한다.

보정이나 추가사항이 발명의 기본적 내용이나 원출원에 포함된 청구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원일은 보정이나 추가사항이 접수된 날로 한다.

보정지시로부터 3개월 내에 보정이나 추가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일과 심사기간은 그만큼 연장되며 출원일이 6개월 내에 보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발명심사국은 발명위원회의 최종심사전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附 錄〉

5. 발명위원회가 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발명심사국이 행한 심사결과에 근거해서 결정해야하며 출원인에게 발명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절사정의 경우는 적당한 거절이유를 나타내야 한다. 발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발명자증이나 특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0조 출원인이 발명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이의이유를 제시하여 3개월 내에 발명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발명심사결과통지서 발급으로부터 3개월 후에 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2. 발명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인과 필요한 사람을 소환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나 기업은 소정기간 내에 필요한 사람을 보낼 의무가 있다.

제51조 발명자증이나 특허를 허여받은 사람은 발명위원회에 국가발명등록증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발명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출원에 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기술혁신등록출원서작성에 관한 일반요건은 이 시행령을 포함하여 규칙 제36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54조 기술혁신등록출원은 소정양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 기술혁신설명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이 속하는 기술분야와 기술혁신의 목적
2. 기술혁신의 대상이 기계, 기구, 건축구조물, 장치 등과 같은 작업수단일 경우에는 겨냥도나 도면과 관련하여 문제의 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조나 개선의 기술적 내용
3. 기술혁신이 물품(구조)의 기술적 공정이나 방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업계통도나 엔지니어링 도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된 기술적 내용
4. 종전 상황과 비교하여 도입의 실제결과(노동, 재료 및 금전절약에 관

한 상황,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상황)에 관한 데이터

제56조 기술혁신등록출원을 수리한 기관이나 기업은 자체 기술심사위원회에서(과학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관련부문 과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결정은 기술혁신등록에 대한 관계 도(시)과학기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술혁신은

1. 타 기관이나 기업에 널리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2. 특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실시되었을 때 최초 6개월 내에 1,000원 이 상의 절감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제57조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심의를 위해 기술혁신등록출원을 수리한 도(시)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달 내에 자체 기술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제출기관이나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58조 기술혁신등록출원이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등록 사정된 경우에는 기관이나 기업의 기술혁신등록부에 등록된다. 거절사정된 경우에는 그 기술혁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당해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발명과 기술혁신의 평가

제59조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신 달성을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되는 국가표창, 명예칭호나 국가 서열의 추천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추천서에 기술적 업적을 기재하여 사전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명위원회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국가이익에 공헌을 한 발명과 기술혁신을 한 자에게 공인 기술자격이나 1등급 높은 기술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상급기관을 통하여 관계 심사국에 심사할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1조 발명자증소유자가 추가로 발명을 하기 위한 문현조사를 할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나 기업은 정규휴가 외에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허락해야 한다.

이 휴가기간에는 여비는 물론 임금(고정임금)도 그 특징기관이나 기업의

〈附 錄〉

발명 · 기술혁신기금으로부터 지급된다.

제62조 발명자증, 특허나 기술혁신자증이란 제목의 서류는 그 소유자가 그 안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서 발명이나 기술혁신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법적 서류이다.

제63조 발명자증, 특히 및 기술혁신자증의 양식과 발명메달의 디자인은 발명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64조 발명자증, 발명메달 및 발명에 대한 보상과 기술혁신자증 및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나 기업의 종업원이나 기술자회의나 국가행사시에 수여한다.

제65조 발명에 대한 인정보상은 다음과 같이 수여된다.

1. 발명에 대한 인정보상금액과 각 발명자에게 지급될 뜻은 그 발명을 최초로 도입한 기관이나 기업이 만약 어느 기관이나 기업도 아직 그 발명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발명이 도입되었을 때 가져올 실제 절감비율에 따라 결정, 지급한다.
2. 발명에 대한 인정보상은 일반적으로 발명자증 및 발명메달과 함께 수여한다.

제66조 발명이나 기술혁신이 사용에 대한 계절적 기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당해년도에 실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보상은 실제로 사용된 기간의 2/3이상 기간 실시를 통해 실제로 가져온 절감에 따라 정한다.

제67조 절감효과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전혀 없는 발명이나 기술혁신의 사용에 대한 보상은 그 중요성에 따라 발명위원회와 당해 기관이나 기업이 결정한다.

1. 절감효과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전혀 없는 발명이나 기술혁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①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것
 - ② 작업상 안전도나 작업환경을 개선한 것
 - ③ 수입품을 동일한 또는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것
 - ④ 경제적 가치를 아직 평가할 수 없는 신의약품류를 포함하여 신제품에 관한 것

- ⑤ 기타 그 기술적 ·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
2. 절감효과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전혀 없는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은 각기 6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제68조 발명이나 기술혁신의 실시에 대한 보상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여 한다.

1.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을 실시를 한 기관이나 기업이 그 발명을 1년 동안 통상적으로 실시한 후 제출한 발명의 도입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발명위원회가 승인을 한 때에 그 기관이나 기업이 수여한다.
 - ① 발명위원회는 실시 기관이나 기업이 제출한 발명실행보고서의 모든 항목을 심사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 지불통지서를 상기 기관이나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발명이 수 개의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서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실시에 대한 보상은 최초로 그 발명을 통상사용에 도입한 기관이나 기업의 도입실행여하에 따라 수여한다. 그러나 타 기관이나 기업도 신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기관이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발명자가 그 발명을 도입할 기관이나 기업을 지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시나 지역 · 행정 · 경제지도 위원회가 발명에 대한 도입실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보상은 발명 · 기술혁신 진흥을 위한 발명위원회가 설립한 기금에서 수여한다.
2.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은 도입기관이나 기업의 기술심사위원회가 기술 혁신을 통상사용에 도입한 최초 6개월에 대한 실행보고서에 비추어 결정하여 수여한다.
3. 어떠한 발명도 발명, 기술혁신, 신기술도입, 중요 기계나 기구의 생산자에 대한 보상이나 유사한 보상을 중복적으로 수여 받을 자격은 없다.

제69조 공동발명자나 공동기술혁신자 각 자에게 수여되는 보상은 단일의 발명자나 기술혁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발명 · 기술혁신의 장려 및 도입

제70조 발명위원회는 행정·경제지도위원회, 부, 중앙기관 및 도위원회에
발명을 할 명확한 목표를 매년 할당해야 하며 할당을 받은 이 기관들은
그 하부기관에 발명·기술혁신을 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속적으로 기술적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에 일어나는 복
잡한 과학적·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나 기업
은 명확한 발명·기술혁신목표계획을 작성하고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
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모든 기관이나 기업은 국민이 많은 발명을 하도록 장려하고 점점 더
많은 발명과 기술혁신을 하는 것이 대중기술혁신운동의 중요한 목표
가 되도록 하고 기술혁명촉진을 향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모든 기관이나 기업은 기술혁신의 촉진을 방해하는 보수주의, 무관심
과 같이 발명과 같은 기술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건전한 태도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함으로써 발명과 기술혁신의 목표달성계획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1조 기관이나 기업은 과학기술개발과제의 하나로서 대중운동에 의해
매년 달성한 발명과 기술혁신을 선정해야 한다. 발명위원회, 도과학기술
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과학기술개발계획의 하나인 시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과제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를 해야 한다.

제72조 위원회, 부, 중앙기관, 복합체(일반조직, 회사, 행정조직) 기타 기
관과 기업은 전국규모로 또는 도에서 개최되는 기술혁신에 관한 전시회,
기술전시, 경험교환을 위한 모임 및 시범강연을 위해 적기에 필요한 사
람, 전시물품, 견본, 표본, 시험자료, 문헌 기타 필요한 것을 보내야 한
다. 상기 목적을 위해 사람의 임금은 그 사람이 속하는 기관이나 기업
이 지급하며 그 기간의 숙식비는 그 사람을 지정한 기관이나 기업이 부
담한다.

'발명 · 기술혁신법'(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3조 타 기관이나 기업이 발명과 기술혁신의 도입에 필요한 관계기술자료, 발명가의 도움 또는 기타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기업은 적기에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지원을 하는 사람의 임금과 숙식비용은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이 부담한다.

제 5 장 벌칙 및 잡칙

제74조 발명 · 기술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범한 자는 법적 책임으로 경제적 제재가 부과된다.

1. 출원발명에 허위의 과학적 · 기술적 내용을 날조하거나 발명의 비밀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2. 발명자중이나 특허에 의해서 보호되는 발명의 부당한 실시나 발명자증의 권리나 기타 특허권자의 권리침해한 행위

제75조 이 시행령은 1986년 11월 1일 발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1991년 3월 13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상표와 봉사표시,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여 상품과 봉사의 질을 보장하고 신용을 담보함으로써 국내외시장들에서 상품판매를 촉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증진에 적극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상표와 봉사표시,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 및 공민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위원회의 상표및공업도안처(이 아래부터는 “상표및공업도안처”라 한다.)는 상표와 봉사표시, 공업도안과 본래명칭에 대한 전반사업을 지도통제하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그에 대한 모든 실무사업을 맡아서 집행한다.

제2장 상표와 봉사표시

제4조 상표란 한 기관, 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기관, 기업소의 같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제5조 봉사표시란 한 기관, 기업소의 봉사를 다른 기관, 기업소의 같은 봉사와 구별하기 위한 표시이다.

제6조 상표와 봉사표시(이 아래부터는 상표라 한다.)는 글자, 그림, 조각 혹은 이것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깔과의 결합으로 표시한다.

등록과 우선권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1. 정해진 상표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경우
2. 다른 기관, 기업소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3.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로서 우리나라에 이미 알려진 경우
4. 국가 혹은 정부적 기구의 상징과 표시, 기발, 국장, 국호 및 그의 간략표시 등이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5. 우리나라 사회주의법, 질서, 도덕, 관습과 대중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것
6.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제내용과 모순되는 것

제8조 기관, 기업소의 상품들과 봉사들에는 하나의 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상품들과 봉사들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여러 기관, 기업소가 만든 같은 형태의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같이 할 수 있으며 그 상표에 대한 권리의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0조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또는 공민은 한 통의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무역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기관이 해당기관, 기업소와 합의필에 등록된 상표를 붙일 수 있다.

제11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와 공민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조선말로 써내야 한다.

제12조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와 공민은 상표등록신청서와 신청자의 법적권리증명서, 상표와 그 설명서, 기타 문건들을 함께 내야 한다. 등록신청문건들의 종류와 양식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상표의 우선권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먼저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낸 기관, 기업소에 준다.

제14조 우리나라와 계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및 공민이 우리나라에 상표를 등록할 때에 우선권은 해당 나라의 상표등록신청문건에 기초하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청자는 자기나라에서 우선권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한 기관, 기업소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및공업도안처에 제기

〈附 錄〉

한 것보다 먼저 다른 기관, 기업소가 국제공업소유권보호동맹성원국에서 인정한 전람회에 상표를 내놓았을 때에 그 상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우선권날자는 전람회가 시작한 날로 하며 전람회가 끝난 후 3 개월 내에 전람회에 참가한 보증문건이 첨부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제16조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낸 신청문건이 불비한 때에는 그 문건을 반환하지 않고 신청문건이 불비하다는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이때 3 개월 내에 해당한 자료를 내야 신청문건을 접수한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 신청문건은 부결된다.

제17조 한 부류의 상품에 적용될 상표등록신청문건에 여러 개의 상표를 포함시킬 수 없으며 매 상표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6개월 내에 심의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19조 상표의 권리(이 아래부터는 상표권이라고 한다)는 그것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와 공민(이 아래부터는 상표권소유자라 한다)에게 준다.

제20조 상표권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소유자는 등록된 상표를 해당한 상품 및 봉사에 쓸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 상표권 소유자의 승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등록된 상표를 리용하지 못한다.
2. 상표권 소유자는 다른 기관, 기업소 및 개인에게 상표의 부분 또는 완전리용에 관한 양도 또는 허가장을 줄 수 있다.
3. 상표권소유자는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제3자가 비법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중지시킬 것에 대한 요구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 해당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상표권보호기간은 상표및공업도안처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매번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연장에 대한 신청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 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내에 그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상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 상표권보호기간내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한 변경신청서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제24조 상표권소유자가 등록된 상표를 양도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기관, 기업소 및 공민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량자의 공동신청서를 상표및공업도안처에 내야 한다.

제25조 한 기관, 기업소가 다른 기관, 기업소를 넘겨받거나 합쳐졌을 때 상표권은 그대로 보존된다.

마감기간과 취소

제26조 상표권보호의 마감기간은 제21조에 규정된 기간이며 상표권소유자의 폐기신청과 포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제27조 상표권에 대한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하였을 때
2. 등록된 상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28조 상표등록이 취소되는데 따라 상표권을 상실한 기관, 기업소 또는 공민은 부당한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나타난 후과에 대한 재정적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상표등록부결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상표및공업도안처 또는 법기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해당기관들은 제때에 신소청원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3장 공업도안

제30조 공업도안이란 제품의 특별한 형태와 장식, 색조화 등으로 제품의 외형을 새롭게 묘사한 것이다. 약간한 변화 혹은 명백하지 않은 변화는 새 공업도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다.

신청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공업도안의 명칭

〈附 錄〉

2. 공업도안창작가 ; 개인 혹은 집단성원의 이름과 직장직위, 주소
3. 공업도안 혹은 그에 대한 사진
4. 공업도안설명서
5. 공업도안에 관계되는 제품명
6. 신청기관, 기업소의 이름과 주소, 공인
7. 신청년월일
8. 국가등록금과 출판료금에 해당한 수입인지

제32조 공업도안신청문건에 공업도안의 유용성에 대한 평정서와 창작가의 창조성에 대한 평정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공업도안등록을 위한 신청문건이 불비하면 그 것을 반환하지 않고 신청문건이 불비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이때 신청기관, 기업소는 3개월내에 해당한 자료를 내야 신청문건을 접수한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 신청문건은 부결된다.

제34조 공업도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것
2.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3. 출판물을 통하여 알려진 것
4. 먼저 전람회에 공업도안이 나가있을 때 그와 류사한 공업도안이 신청으로 제기되는 것

제35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6 개월내에 등록한다, 창작증과 등록증은 신청문건을 등록할 때에 발급한다.

제36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공업도안이 등록되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그것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에 권리리를 준다. 이 권리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7조 공업도안신청기관, 기업소는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에 일치할 때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제38조 공업도안의 유일한 사용권한을 받은 기관, 기업소들은 공업도안사용권리를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길 수 있다.

제39조 공업도안등록에 대한 마감기관과 취소는 이 규정 제26조, 제27조

대로 한다.

제 4 장 본래명칭

제40조 제품의 본래명칭(이 아래부터 본래명칭이라 한다.) 이란 제품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나라, 지역, 지방의 이름이다.

제41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본래명칭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다.
신청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한다.

1. 창작가의 이름, 직장, 직위, 주소
2. 본래명칭도안 혹은 그에 대한 사진
3. 본래명칭에 대한 설명서
4. 지적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 지역, 지방의 이름
5. 본래명칭을 붙이려는 제품명
6. 신청기관, 기업소의 사업에 관한 기본자료
7. 본래명칭등록신청기관, 기업소의 이름과 주소, 공인
8. 신청년월일
9. 국가등록금과 출판료금을 지불하는 수입인지

제42조 다른 나라기관, 기업소들이 우리나라에 본래명칭을 등록신청문건을 제출하려고 할 때는 자기 나라에서 등록한 본래명칭등록신청문건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3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본래명칭등록신청문건이 불비하면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신청문건이 불비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이때 신청기관, 기업소는 3개월내에 해당한 자료를 내야 그 문건을 접수한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 신청문건을 부결된다.

제44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본래명칭등록신청문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6개월내에 등록한다. 신청문건을 등록할 때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45조 특정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조직은 본래명칭을 등록 할 수 있다.

제46조 등록된 본래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제47조 본래명칭이 포함되는 상표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附 錄〉

경우에만 등록한다.

제48조 우리나라에 등록된 본래명칭은 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들의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에 취소된다.

제5장 부 록

제49조 상표및공업도안처는 정기적으로 조선상표라는 공보를 발행한다.

제50조 파리조약 제2조 1항에 따라 파리조약성원국의 기관, 기업소와 공민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및 공민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일체 수속업무를 우리나라 상표대리기관을 통해서 해야한다.

제52조 상표등록신청, 상표권 보호기간연장신청, 일부 변경신청과 신소청원 등에 관한 모든 수속은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그 지불방법과 료금은 따로 정한다.

제53조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 수 있다.

제54조 이 규정을 어기고 상표를 마음대로 만들거나 고치며 제멋대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공민들은 해당한 재정적 및 법적제재를 받는다.
이 규정은 1991년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1983년 6월 1일에 내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및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없앤다.

북한의 「발명법」(5장 43조) 법규 해설

『민주조선』, 1998년 6월 11일 보도

최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발명법이 채택되었다. 발명법 채택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없으며 내나라, 내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등 발명사업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모두 5장 43조로 되어있다.

제 1 장 발명법의 기본에는 발명법의 사명과 발명의 개념, 발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규제되어 있다.

발명법 제 1장에서는 먼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법의 사명으로 규제하고 있다.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 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발명사업의 기본 절차이며 여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 것은 발명사업의 성과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발명법은 자기의 사명을 옳게 규제함으로써 발명사업이 나라의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주고 있다.

〈附 錄〉

제 1 장에는 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이라고 밝히고 국가는 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준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제는 발명의 심의등록을 비롯한 발명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없애고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담보가 된다.

발명법은 발명사업에서 지켜야할 원칙들을 규제하고 있다. 발명사업에서 지켜야할 원칙들을 옳게 규제하는 것은 발명사업을 당과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맞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발명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기본 담보이다.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을 그 심의 등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 것을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으로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다.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발명의 심의들록에서 개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발명권,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것이 정확히 행사되도록 하며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발명사업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원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제에 의해 발명사업이 철저히 당과 국가의 정책과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진행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발명법 제1장에는 이밖에도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발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규제되어 있다.

제2장 발명등록의 신청에서는 발명등록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은 창조한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 담보라고 밝히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의 신청을 제 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또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발명등록 기관에 하며 발명등록 신청문건은 내용별, 건별로 갈라 만들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발명등록의 신청과 관련한 실무적 절차와 방법들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제는 발명등록의 신청사업을 올바로 하여 가치있는 과학기술적 발명들을 제때에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담보를 준다.

제3장 발명의 심의등록 절차와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옳게 검토평가하는 것이다.

제기된 기술의 특성, 수준, 공업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효과성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옳게 평가하여야 모든 발명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법은 발명의 심의등록을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 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발명등록, 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명등록기관이 이 사업을 정확히 할 데 대하여서와 발명의 심의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규제하고 있다.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는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와 관련한 절차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들이 규제되어 있다.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그 권리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附 錄〉

발명법에 의하면 발명등록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으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이 이용권을 정확히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발명권 제4장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보호와 관련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에 의하여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사업을 정확히 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에서 발명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규제된 문제는 국가과학기술행정 지도기관이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현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대중적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 경험교환회, 현상모집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규제는 발명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철저히 과학기술발전과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담보로 된다.

북한의 ‘창의고안규정에 대하여’(4장 23조) 법규해설

『민주조선』, 2001년 6월 12일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나가며 누구나 다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광범한 군중을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인입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속에서 창의고안명수와 발명가가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을 승인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개건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규정은 모두 4장 23조로 되여 있다.

제1장에는 우선 규정의 목적이 밝혀져 있다.

규정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창의고안을 더 많이 하며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고 제때에 생산에도 입 일반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양시키고 인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규정은 제1장에서 창의고안의 개념과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지도단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등도 규제하고 있다.

〈附 錄〉

규정에는 창의고안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범위에서 기계설비와 장치, 요소와 재료, 제품, 기술공정, 생산방법의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주는 기술적성과를 말한다고 밝혀져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하여 주로 생산에서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거두도록 한다는데 있다.

규정에 의하면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가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하며 그 실무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또한 규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적용하며 발명 및 발견을 비롯한 창의고안의 개념에 맞지 않는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들은 당과 국가의 정책적의도에 맞게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지키고 이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해 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규정 제2장에는 창의고안의 신청과 심의, 등록에서 나서는 요구와 그 절차, 방법이 규제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창의고안등록을 위한 신청을 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하며 신청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1개월안으로 제기된 창의고안의 기술적내용과 그의 기술경제적의의 및 도입효과를 기본으로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것이다. 또한 등록하기로 결정된 창의고안을 창의고안등록대장에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창의고안의 신청과 심의, 등록에 대한 규제들은 창의고안사업을 제정된 질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수 있는 담보로 된다.

규정 제3장에는 창의고안에 대한 평가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창의고안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여 더 많은 창의고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규정에는 등록된 창의고안에 대하여 창의고안자들에게 창의고안증서와 상금을 주며 기관, 기업소는 새로운 창의고안을 받아 들여 얻은 리익금 또

는 예산절약액의 일부를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술혁신표창자금으로 쓰도록 규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가 창의고안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거나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국가표창과 한등급이상의 기술자격급수 또는 인증기술자격을 주기 위한 사업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규정은 기술혁신운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창의고안명수들을 키워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실천적담보를 마련하고 있다.

규정 제4장에는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요구들이 규제되어 있다.

여기에는 성, 중앙기관 및 도인민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아래기관, 기업소들에 창의고안목표를 주고 장악지도할 데 대한 문제, 기관, 기업소가 창의고안의 장려, 심의등록 및 도입, 평가 사업을 바로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할데 대한 문제, 기관, 기업소가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교환회, 현상모집, 방식상학, 견학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창의고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이 밝혀져 있다.

이번에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것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번에 제정된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의 요구를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 나감으로써 당의 의도대로 더 많은 창의고안을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

2001년 7월 1일 발효²⁾

제1장 총칙

제1조 발명창조전리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폭넓은 응용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發明), 실용신형(實用新型) 및 외관설계(外觀設計)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국의 전리업무를 관장한다. 모든 전리출원을 접수 및 심사하며 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전리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전리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국가법률이나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6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본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출원의 권리는 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본 단위가 전리권자로 된다.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출원의 권리는 발명자와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전리권자로 된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정한 계약이 있으면, 약정한 때로부터 전리출원의 권리와 전리권의 귀속은 약정한 바에 따른다.

2) 중국의 專利法 全文의 국문번역은 박희주, 앞의 논문, 34~45면.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출원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2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나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리출원의 권리자는 완성 또는 공동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되면 출원의 단위 또는 개인이 전리권자가 된다.

제9조 2이상의 서로 다른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를 출원하면, 전리권은 최우선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제10조 전리출원권 및 전리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유관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등기하여야 하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이를 공고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양도는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발명 및 실용신형 전리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또는 경영목적의 제조, 사용, 허락판매, 판매, 전리제품의 수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전리방법의 사용 및 그 전리방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허락판매, 판매, 수입을 할 수 없다.

제1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자와 서면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리권자에게 전리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그 전리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발명전리가 출원공개된 후에는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전리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원 유관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附 錄〉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응용을 결정하고, 지정한 단위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허락 할 수 있으며, 실시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전리권자에게 사용비를 지급 한다.

중국 집체소유제단위 및 개인의 발명창조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고 광범위한 응용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전리권자는 그 전리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발명표기 및 발명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 전리권을 수여 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전리의 실시 후에는 응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전리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전리를 출원하고 또한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한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전리를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 전리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전리출원 또는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피대리인의 발명 창조 내용에 대하여, 전리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전리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를 외국에 전리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하고, 지정된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처리하며, 또한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에 따라 전리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 유관규정에 따라 전리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21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과 전리복심위원회는 객관, 공정, 정확, 적시의 요구와 법에 따라 유관 전리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리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직원 및 관련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조건

제22조 전리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형은 신영성(新穎性)³⁾, 창조성(創造性)⁴⁾ 및 실용성(實用性)⁵⁾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영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국내·외 출판물상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공개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타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출원을 제출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전리출원 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창조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해 볼 때,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으며, 실용신형은 실질적 특성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라 함은 그 발명과 실용신형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또한

3) 한국의 특허법상 '신규성'이란 용어에 해당함.

4) 한국의 특허법상 '진보성'이란 용어에 해당함.

5) 한국의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용어에 해당하는 것임.

〈附 錄〉

긍정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23조 전리권을 수여하는 외관설계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또는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외관설계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 전리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영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 (2) 규정된 학술회의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아래 각 항에 대하여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 (1) 과학발견
- (2) 지력활동의 규칙 및 방법
-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 (5) 원자력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상기 제(4)항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전리의 신청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설명서와 그 요약서 및 권리요구서 등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그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도면이 있어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기술적인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관설계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외관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외관설계를 사용하는 제품 및 소속 류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리출원 문건을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 문건이 우편 발송인 경우에는 발송한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외국에서 1차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외관설계를 외국에서 1차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같은 주제로 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나 공동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승인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1차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같은 주제로 전리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시 서면성명(書面聲明)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전리출원 문건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도록 전리출원 문건의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1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전리출원은 1항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한정한다. 1개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전리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자신의 전리출원 문건에 대하여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 및 실용신형 전리출원 문건의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 기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관설계 전리신청 문건의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표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 및 비준

제34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발명전리의 출원을 접수한 후에는 방식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 부터 18개월 후에 이를 공개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을 조기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전리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이 넘도록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전리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전리의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출원일 이전에 있어서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전리가 이미 외국에 출원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그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을 진행한 자료나 또는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발명전리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진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발명전리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이나 보정 후에도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전리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발명전리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전리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발명전리권은 공고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전리의 출원이 방식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실용신형전리권 또는 외관설계전리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리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이를 공고한다. 실용신형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는 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리출원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출원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복심한 후에 결정하고 전리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전리출원인이 전리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장 전리권의 기한 · 중지 및 무효

제42조 발명전리권의 기한은 20년으로 하고, 실용신형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기한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전리권자는 전리권을 수여 받은 당해 년도부터 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중지된다.

- (1) 규정에 따라 낸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전리권자가 서면성명으로 전리권을 포기한 경우

전리권이 기한 만료 전에 중지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그 전리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가 그 전리권이 무효임을 선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전리복심위원회는 전리권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시에 심사

〈附 錄〉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전리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전리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전리복심위원회의 전리권 무효선고 또는 유지선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단계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무효선고된 전리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리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전리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기 집행한 전리침해의 판결·재정, 기 이행 또는 강제집행한 전리침해분쟁처리결정, 기 이행한 전리실시허가계약 및 전리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전리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도인이 허가받은 실시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수인에게 전리사용비 또는 전리권양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도인은 허가받은 실시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수인에게 전리사용비 또는 전리권양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전리권자에게 그 전리실시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단위의 신청에 따라 그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형전리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에 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가 출현했을 때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형전리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0조 전리권을 취득한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전에 이미 취득한 전리권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를 갖는 중대

기술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실시가 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실시에 의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후의 전리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가 부여되는 상황하에서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권리자에게도 신청에 근거하여 후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실시를 강제허가할 수 있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서 전리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강제실시허가의 결정은 적시에 전리권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의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실시의 이유가 해소되고 재발생하지 않을 때,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심사후 강제실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강제실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또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도 없다.

제54조 강제실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전리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액은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재결한다.

제55조 전리권자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강제실시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전리권자와 강제실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강제실시허가 사용비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장 전리권의 보호

제56조 발명 또는 실용신형 전리권의 청구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附 錄〉

있다.

외관설계전리권의 청구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 상에 표시된 외관설계전리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전리권자의 허가없이 그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 즉 그 전리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전리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할 때 권리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소하지도 아니하고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지도 아니할 경우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전리권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리권리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전리에 관한 것일 때는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전리방법과 같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형에 관한 것일 때는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자에게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타인의 전리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 외에,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59조 비전리제품을 전리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전리방법을 전리방법으로 사칭하는 경우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60조 전리권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에 의해 받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리허가 사용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제61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고 한다는 증거증명이 있으며,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리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상기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전리권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으로 하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전리출원이 공개된 후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리권자가 사용비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전리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알거나 당연히 알게된 경우에는 전리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3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전리권자가 제조, 수입 또는 전리권자의 허가를 얻어 제조, 수입한 전리제품 또는 전리방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에 그 제품을 사용, 허락판매 또는 판매하는 경우
- (2) 전리출원일 이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경우
-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운송수단은 그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수단 자신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附 錄〉

에 유관 전리를 사용하는 경우

(4) 과학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유관 전리를 사용하는 경우

생산경영목적을 위하여 사용 또는 판매한 제품이 전리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된 전리제품 또는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획득된 제품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전리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소재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65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전리신청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에는 소재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66조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사회에 전리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한 수입이 있으면 몰수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67조 전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직원 및 기타 유관국가기관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8장 부칙

제6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수속을 처리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参考文献

(단행본)

金元俊, 「特許法」(박영사, 2001).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の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한국법제연구원, 1999).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 IV」(한국법제연구원, 1998).

「남북경협사례집」(한겨레신문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0. 3, 2001. 4).

「남북교류협력법제 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연구자료 6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1990).

송영식, 이상정, 「지적재산법」(세창출판사, 1999).

이수웅, 「특허법」(삼선, 2001).

장명봉 ·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정비동향」(한국경제연구원, 2001)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법무부, 1995).

「2002 연합연감」(연합통신사, 2001).

「KORTA 남북경협 설명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11).

高倉成男, 「知的財産法制と國際政策」(東京: 有斐閣, 2001).

紋谷暢男, 「無體財産權法概論」, 第9版(東京: 有斐閣, 2001).

〈参考文献〉

西原春夫, 「中國知的所有權法の理論と實際」(東京: 成文堂, 1998).

李衛東, 「現代中國の法變動」(東京: 日本評論社, 2001).

田村善之, 「知的財產法」(東京: 有斐閣, 2000).

(논문)

고일동,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KDI 북한경제리뷰」(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1999. 4).

강경찬, “特色있는 中國 產業財產權制度에 관한 考察”, 「지식재산21」, 통권 제52호(특허청, 1999. 1).

강병근,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보호”, 「국제판례연구」, 제1집, 1999

권규우, “북한 산업재산권제도 현황 및 남북한 산재권 교류협력방안”, 「지식재산21」, 통권 제64호(특허청, 2001. 1).

나동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하여”, 「지식재산21」, 통권 제57호(특허청, 1999. 11).

박성호, “북한 저작물의 현행 저작권법상의 이용방법”, 「인권과 정의」, 1991. 11월호(대한변화사협회, 1991)

朴井源,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새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2000년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I」(법제처, 2000).

_____,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 分析”, 「북한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법원행정처, 2001).

박현숙, “월북작가 박태원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까지”, 「제간저작권」, 1990 봄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 박희주, “중국의 개정 전리법 고찰”,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특허청, 2001. 5).
- 송영식, “남·북한 저작자의 법적 지위”, 「계간저작권」, 1989 여름호(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1989).
- 윤대규, “북한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북한법연구」, 제3호(북한법 연구회, 2000).
- 이장희, “남북한 저작권 보호의 협력 방안”(2), 「계간 저작권」, 1994년 봄 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 이재완,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계간 저작권」, 2000년 가을호 제51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 이재완,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계간 저작권」, 2000년 가을호 제51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 이찬우,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http://www.kotra.or.kr/nk/>
- 張明奉, “北韓 社會主義憲法 改正('98. 9. 5)의 背景·內容·評價”, 「公法研究의 回顧」, 第79回 學術發表會 發表論文(韓國公法學會, 1998. 12. 19).
- _____, “남북기본합의서·부속합의서 실천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 「통일」(통권 제135호, 1992).
- _____,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보장장치의 필요성과 방향”, 「統一經濟」(1999. 8).
- _____, “북한헌법의 개정과 대외경제개방”, 「북한 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법원행정처, 2001).
- 정문영, “북한 상표법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창간호(세창출판사, 1995).

〈参考文献〉

정상조, “남북한간 산업재산권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논문자료집」(통일원, 1996).

「조선일보」, 1999년 9월 27일.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KOTRA)(<http://www.kotra.co.kr/nk/nation/law/2002html>)

(북한원전)

「민사법사전」(평양 :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법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조선말대사전 1, 2」(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경제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WIPO National Seminar On Trademarks, Pyongyang, (2000. 5. 4-5).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역사 · 법학」, 제46권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